

ISSN 2465-9207

#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제10권  
제2호  
2024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 미디어와 인격권

제10권 ■ 제2호 ■ 2024

## ■ 기획논문 디지털 심화 시대의 저널리즘과 인격권

---

### 1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 언론 관련 판결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

### 51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  
이 현 경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비전임 교수, 법학박사)  
전 형 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박사후 연구원, 철학박사)

## ■ 연구논문

---

### 81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 이수중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 부록

---

- 138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150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 157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 Contents

---

- 1 **Journalistic Principles in the AI Era**  
- Analyzing Court Decisions and Media Guidelines -  
**Park, Ahran**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 51 **Normative Analy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 Focusing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M.L. and W.W. v. Germany -  
**Lee, Hyun Jung**  
Adjunct Facul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Erlangen-Nürnberg Germany, Dr. jur.
- Jun, Hyungjoon**  
Postdoctoral Researcher,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Erlangen-Nürnberg Germany, Dr. phil.
- 81 **The Reply-Reporting System under the German Media State Agreement (MStV)**  
**Lee, Soo Jong**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ecutive Adviser/Ph.D.

# 인공지능 시대의 저널리즘 원칙

- 언론 관련 판결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분석을 중심으로 -

박 아 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조교수

## 국문 초록

챗GPT를 필두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 환경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 언론의 주된 업무는 문장과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생성이다. 더욱 빠르고 능숙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언론이 되짚어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저널리즘 원칙과 언론윤리이다. 저널리즘이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 한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저널리즘 원칙을 되짚어보고,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를 구현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였다. 언론 관련 국내 판결을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저널리즘 원칙에서 강조되는 감시견 기능과 사실 확인 역할은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즉,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공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법해석을 통해 강조되고 있었으며, 기사가 사실 확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언론 자유에 관한 판결에 비추어볼 때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여 언론 자유에 대한 보장과 한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법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도 중요하다. 입법을 통

\* ahranpark@korea.ac.kr

해 빠른 기술변화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유연한 규제로서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자율규제 일환으로 해외에서 발표된 22개의 언론 관련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과 국내에서 발표된 3개의 언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그 결과, 언론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들은 각각 명칭과 내용, 분량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주요내용으로 (1)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원칙 보호,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범위 제시, (3)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4) 투명성과 라벨링 표시 의무, (5) 타인의 창작물 보호, (6) 공정성과 비편향성, (7) 데이터와 영업비밀 보호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인공지능 준칙과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과 제정과정에서 여러 한계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인공지능 시대에도 언론이 민주주의 제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작동할 것을 강조했다.

주제어: 생성형 인공지능, 저널리즘 원칙, 언론 자유,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감시권

## 목 차

- I. 서론
- II. 사법부와 저널리즘 원칙의 구현
  - 1. 언론윤리와 저널리즘 원칙
  - 2. 판결에 나타난 언론 역할과 언론 자유의 한계
- III. 언론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 IV. 언론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 1. 해외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 2.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
- V. 논의 및 결론

### I. 서론

저널리즘(journalism)으로 일컬어지는 언론의 다양한 취재 및 보도 활동은 20세기 들어 미디어 기술 혁신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겪어왔다(Kerr, Park, & Youm, 2023).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사에 사진이 활용되었고 방송 기술의 발달은 영상보도라는 변혁을 초래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에 확산된 인터넷은 언론의 생산방식뿐만 아니라 기사의 배포, 매개, 내용과 포맷 등 여러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다. 이처럼 미디어 기술 혁신이 초래한 저널리즘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전제가 있었는데, 바로 ‘인간’ 언론인이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 언론인’이라는 대전제는 2010년대 알고리즘을 활용한 ‘로봇 저널리즘’이 본격화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로봇 저널리즘이란 알고리즘이 기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과 기사의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의 저널리즘을 뜻한다(김동환·이준환, 2015) 하지만 로봇 저널리즘은 스포츠, 날씨, 주가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문의 기사를 작성하는 데 주로 활용됨으로써 그 영향력은 상

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로봇 저널리즘이 언론 혁신에 끼치는 영향력도 작은 편이었다. 해외에서는 로봇 저널리즘이 관행과 규범 등 저널리즘 제도 자체의 변화를 위해 추구되었으나, 한국 언론사들은 트래픽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를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백재현·임종수, 2018). 로봇이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편향성 및 보도를 위한 갈등상황에서 기계적 가치판단 등 중요한 윤리적 이슈도 지적되었다(박남기, 2020; Dörr, & Hollnbuchner, 2017).

2022년 11월 챗GPT(ChatGPT)의 출시는 미디어 대변혁을 예고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두 가지 변혁을 겪었는데, 첫 번째는 1980년 윈도우(Window)를 비롯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의 등장 이었고, 두 번째는 OpenAI가 개발한 GPT 모델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의 탄생이라고 하였다(Gates, 2023). 대규모 언어모델(LLM)의 보편적 활용을 가능하게 만든 차세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전의 인공지능 도구와 차별점이 있다. 기본적인 프롬프트만 있으면 텍스트부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즉각적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직관적인 채팅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이 인공지능 도구에 쉽게 접근하여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지속적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더욱 능숙하게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발달속도는 이용자들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빠른 상황이다.

특히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업계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널리즘 활동의 본질이 글과 이미지, 영상 등 ‘콘텐츠 생성’인데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능숙하게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면 저널리즘 업(業)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널리즘 분야의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들은 내용과 형태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해외 언론계에서도 취재 아이디어부터 기사 작성, 배포, 소셜 미디어용 뉴스 작성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Diakopoulos et. al., 2024). 결국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저널리즘 업무 관행의 대변화를 초래할 것이고 이에 따른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에 대해서도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저널리즘 영역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및 신뢰도 조사도 행해졌다. 2024년 유고브(YouGov)는 2,000여 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뉴스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과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8%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대다수 응답자(79%)는 언론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았을 경우 이를 기사에 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공지능과 인간 기자의 조합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인간 기자와 인간 편집자 조합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으며, 인공지능 기자와 인공지능 편집자 조합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타자 검사 및 문법 편집(73%), 기사 번역(67%)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공지능이 언론인을 대신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70%가 반대했다(Smith, 2024).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즘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피할 수 없기에 이제 언론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올바르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해외 비영리 팩트체크 단체인 풀팩트(Full Fact)는 2024년 4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의 신뢰와 진실’이라는 보고서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허위정보와 오정보의 확산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언론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정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풀팩트는 제시했다.

저널리즘 부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뉴스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언론인이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저널리즘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을 통해 일부 작업을 자동화하여 제작 속도를 향상시키고 독자들의 문의에 더 빠르게 답변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배포를 통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가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더욱 빠르게 도달될 수 있으며, 언론사는 이용자와의 직접적 교류를 통해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뉴스를 파악할 수 있고 기존 플랫폼에 종속되어 얻지 못하던 뉴스 이용자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기본원칙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신속하게 정형적인 기사를 생산할 수 있지만, 저널리즘 기본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 다양성 등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사 내용에 부정확하거나 허구의 내용이 포함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으로 인한 허위정보(disinformation) 생성의 위험이 있으며, 인공지능이 콘텐츠 생성 과정에서 기존의 잘못된 데이터나 자료를 활용한다면 오류를 반복하거나 편향과 차별을 증폭시킬 위험도 따른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기사는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워 다양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법을 통한 규제도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2024년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최종 승인하였다. 그러나 법을 통한 규제는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규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윤리적 규범 마련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자율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것도 저널리즘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발달과 그에 따른 규제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에 적용될 수 있는 저널리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널리즘 원칙은 언론에 윤리적이고 선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사법부가 저널리즘 원칙

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언론 관련 판결을 수집하여 사법부가 언론의 역할과 언론 자유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둘째, 생성형 인공지능이 저널리즘 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이 언론 분야에 초래할 변화와 위험을 제시한다. 셋째, 저널리즘 분야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중심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국내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로앤비(LawNB) 등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수집하고, 온라인 검색과 2차 자료를 통해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II. 사법부와 저널리즘 원칙의 구현

### 1. 언론윤리와 저널리즘 원칙

언론윤리란 뉴스를 만드는 편집부 직원들에게 기대되는 행동강령을 의미한다(Dennis & Merrill, 2002). 언론인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강령으로서의 언론윤리는 그 내용과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언론윤리는 본질적으로 갈등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에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남재일(2010)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강형·남재일(2019)은 언론윤리란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뉴스 생산조건의 타협의 산물로 본다. 즉, 언론은 시민의 대리인이자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공적 존재로서 공익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사기업인 언론사는 영리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의 지속 가능한 공익추구는 사기업의 영리추구 행위를 경유해서만 가능한 모순적 구조이므로 언론인과 언론사는 본질적으로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존의 언론윤리는 디지털 환경에 처한 저널리즘 현실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준웅(2017)은 뉴스 주기 개념의 해체로 인한 사실성, 정확성 가치에 대한 기대 변화, 뉴스와 비(非)뉴스의 모호한 경계로 인한 기존 언론윤리의 한계, 알고리즘 편집의 모호한 책임소재 등을 이유로 새로운 언론윤리 도출을 주장하면서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시대의 언론윤리를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 상윤모·박소영(2023)은 해외 주요저널에서 언론윤리에 대한 논문이 활발히 발행된 반면, 국내에서는 언론윤리 연구가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예비 언론인과 현직 언론인에 대한 체계적 언론윤리 교육 시스템도 부재하다고 보았다.

언론윤리와 저널리즘 원칙이 현실적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 언론계에서는 그간 다양한 자율규정이 제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언론윤리헌장, 신문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강령,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한국사진기자협회 윤리규정, 취재현장에서의 포토라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재난보도준칙,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성폭력범죄보도 세부권고 기준, 자살보도 윤리강령, 자살보도 권고기준3.0, 트라우마 예방 재난보도 가이드 등 다양한 자율규정이 제정되어 있다. 협회 차원의 자율규정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들도 개별적으로 윤리강령과 준칙 등을 제정하고 있으나, 각 규정 간의 충위가 맞지 않거나 내용상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보인다. 따라서 조소영(2022)은 개별적 강령에서 내용 자체의 적실성 확보와 규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언론윤리는 언론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윤리와 법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시간과 장소가 변함에 따라 경계도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법과 언론윤리는 종종 함께 논의된다(상윤모·박소영, 2023). 그러나 이재진(2005)은 언론과 사법부가 언론윤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간극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언론윤리의 실천자로서 언론은 언론윤리 문제를 구

체적 행위의 문제로 파악하면서 당위성의 문제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인식한다. 반면, 사법부는 언론윤리를 언론의 ‘기능’이나 ‘역할’과 연결시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언론은 언론윤리를 구체적 갈등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기준으로 보는 반면에 사법부는 언론윤리를 언론의 기능과 역할과 연관지어 이를 불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이재진, 2005).

그렇다면 언론윤리와 저널리즘 원칙이 사법부에 의해 현실적 의미의 위법행위 기준으로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리와 원칙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추상적 기준인 윤리와 원칙이 현실적인 법 기준으로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현장의 언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통해 저널리즘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하에서는 언론 관련 판결에서 언론윤리와 저널리즘 원칙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 2. 판결에 나타난 언론 역할과 언론 자유의 한계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 디지털 시대 네 가지의 중요한 기자 임무를 제시한다(Kovach, & Rosenstiel, 2021). 기자의 첫 번째 임무는 ‘진실확인자(authenticator)’ 역할이다. 과거와는 달리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자들은 미디어 이용자와 함께 다양한 주장을 추려나가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판단하여 이용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의미부여자(sense maker)’ 역할이다. 기자는 사건의 맥락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의미체계를 가지고 뉴스를 소화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셋째는 ‘목격자(bear witness)’ 역할이다. 기자는 단순한 게이트키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로 질문을 제기하고 사안을 파고드는 목격자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는 ‘감시견(watchdog)’ 역할이다.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고전적인 것이지만 디지털 시대에도 사회적 부정행위를 드러내기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저널리즘 원칙은 과연 구속력 없는 윤리적 선언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널리즘 원칙상의 언론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해석을 살펴본다. 사법부가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언론 관련 소송에서 언론의 위법성 조각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윤리와 원칙은 현실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언론 자유의 의미도 가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로앤비(LawnB) 데이터베이스 및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웹사이트에서 ‘언론 자유’를 키워드로 관련 판결을 수집하여 언론의 기능 및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 가. 감시견으로서 공익적 감시와 비판

저널리즘 원칙에서 언론의 감시견(watchdog) 역할은 정부와 공직자를 감시하여 권력자를 견제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사법부는 공직자가 비판적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여 언론의 감시견 기능을 저해하고 위축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를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6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뉴욕타임즈 대 설리반(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sup>1)</sup>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원칙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류가 있는 표현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면서 언론 자유에 ‘숨 쉴 공간(breathing space)’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 악의

<sup>1)</sup> New York Times v. Sullivan, 376 U.S. 254 (1964).

(actual malice)’ 원칙을 마련했다. 언론이 공직자에 대해 오류가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사용했다라도 그러한 표현이 ‘거짓임을 알면서 또는 진실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면서(knowing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of truth)’ 발화된 것임을 원고인 공직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직자가 승소할 수 없다. 이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했다.

한국 법원도 명예훼손법이 역사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음을 주목하였다.<sup>2)</sup> 따라서 보도의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 관심사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그 보도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판단하여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2003년 대법원은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 감시와 비판을 주된 임무로 하는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보도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sup>3)</sup>

이처럼 사법부는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 여부를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가령, 국회의원 비위 의혹에 관한 JTBC 보도에 대해 해당 국회의원이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022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도에서 언급된 ‘규제의 해제’ 등의 표현은 일부 사실관계를 압축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수사적 과장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방송 뉴스에서 당해 의원이 비위 행위나 부조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측의 반론이 포함된 점을

2)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3)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근거로 이러한 뉴스는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sup>4)</sup>

전직 장관이 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202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공익에 해당하느냐, 원고는 공적 인물로서 다양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폭넓게 수인하여야 할 위치에 있고 해당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sup>5)</sup>

또한 보도된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언론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즉, ‘진실 오신 상당성’이 있다면 공익적 언론보도를 면책시킴으로써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폭넓게 보호해왔다. 즉,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러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는 ‘진실 오신 상당성’<sup>6)</sup>의 법리도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언론매체에 있다고 하여 법원은 언론 스스로가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였다.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언론인이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sup>7)</sup>

결국 법원이 확립해온 공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 기준과 진실 오신 상당성 기준은 언론이 공익을 위한 감시견으로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1가합31842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186 판결.

6)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서 기능하고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널리즘 원칙으로서의 감시견 역할은 법원의 해석을 통해 보장받고 있으며, 이러한 감시견 기능은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나. 진실확인자로서 사실 확인

온라인에 넘쳐나는 정보에 대해 진실확인자(authenticator)로서 사실 확인(fact checking) 기능을 행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기자가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Kovach, & Rosenstiel, 2021). 기자의 사실 확인 역할은 법원이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언론인의 사실 확인 노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한 보도의 경우 신중한 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일반 독자들이 보도된 혐의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언론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보도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며, 언론 보도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해 피의자로 거론된 사람과 주변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강조해왔다.

법원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가령, 2018년 대법원은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했다.<sup>8)</sup> 부산지방법경찰

<sup>8)</sup>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다240829 판결.

청이 배포한 보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기사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보도 자료이므로 언론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법성을 조각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해당 보도 자료는 공식 자료가 아니라 언론사의 추가취재를 전제로 배포된 것인데도 언론사들이 추가적 취재를 하지 않았으며 피의사실을 급박하게 보도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면서 위자료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밖에도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경찰이나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을 바탕으로 기사화한 경우,<sup>9)</sup> 직접 취재를 하지 않고 다른 기자의 기사를 참조하여 기사를 작성한 경우,<sup>10)</sup>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경우<sup>11)</sup> 등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언론은 패소했다.

그러나 언론사가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언론의 명예훼손 위법성을 조각했다. 가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2022년 대법원은 언론의 손을 들어주었다.<sup>12)</sup> 이 사건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1)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으며 보도 내용도 제보의 진위 추적과정이 실패하였음을 시인하거나 관련 수사 등을 촉구하는 정도여서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으며, (2) 언론인들이 보도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기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3) 방송 내용의 공익성이 인정되며 해당 공직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따라 보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며, (4) 원고 측 입장이 반론 내용으로 방송에 포함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은 공공의 이익

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1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

1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1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1168 판결.

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을 종합해볼 때 저널리즘 원칙으로서 기자의 사실 확인 의무는 법정에서 언론인을 면책시키는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을 위한 언론인의 성실한 취재와 노력은 시대와 매체 기술이 변화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결국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사실 확인 의무는 변함이 없으며, 자동화된 기술을 사용할 경우 사실 확인 필요성이 법정에서 더 강조될 가능성도 있다.

#### 다. 언론 자유의 한계와 권리 보호

언론의 자유나 알 권리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헌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언론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언론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제37조 제2항). 언론중재법도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그 한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제4조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도 언론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으로 인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일지라도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경우 목격자이자 의미부여자로서 언론 역할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 입장에서는 공익적 가치가 크다면 최대한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이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겠지만, 언론은 보도 대상자의 명예나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의무가 있기에 언론 자유와 인격권 간의 권리충돌이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은 언론의 범죄자 신상공개 사례에서 두드러진다. 실제로 유명 코치의 제자 폭행 의혹을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019년 JTBC는 초등학교 제자들을 폭행한 유명 피겨스케이팅 코치의 실명과 사진을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공개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기자가 처벌받게 되었다. 결국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사항 보도금지 대상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동학대 행위자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언론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합헌이라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단했다.<sup>13)</sup> 당해 법조항이 추구하는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공익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도 2024년 5월 당해 조항을 근거로 기소된 JTBC 기자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sup>14)</sup> 하지만 당해 조항은 피해아동의 실제 법익침해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입법목적에만 중점을 두고 학대행위자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신상현, 2023).

결국 언론은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언론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언론윤리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법은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sup>13)</sup> 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

<sup>14)</sup>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 16950 판결.

이러한 윤리적, 법적 기준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기에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때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초상권, 음성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 라. 디지털 기술과 언론 자유

현재로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언론 보도에 대한 국내 판결은 검색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기술과 관련된 언론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해석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언론 자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유추해볼 수밖에 없다.

한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가령,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으로서의 언론의 자유가 ‘개인이 언론활동을 통하여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개인적 가치인 자기실현의 수단’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회적 가치인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핵심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sup>15)</sup> 또한 국민은 언론매체의 보도에 크게 의존하며 언론 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하게 하여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의 확보’와 ‘언론에 의한 정보 전달’은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라고 헌법재판소는 강조했다.

사법부는 인터넷 기술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기존의 인쇄 및 영상 매체와 비교해볼 때 ‘진입 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 매체’로서 ‘가장 참여적인

15) 헌법재판소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매체)시장이자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보았다.<sup>16)</sup> 대법원도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참여적 대중매체’라고 판시했다.<sup>17)</sup>

이처럼 사법부가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언론 자유와 관련된 법리는 전통적 언론을 넘어서 인터넷 매체에도 적용된다고 판단되었다.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 등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보도 제한 사건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18)</sup>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기제한 조항이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 선거나 정치적 의사표현과는 상관없는 내용인 경우에도 게재를 제한하여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한 선거 보도를 한다면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보도에 대해 독자들의 반론과 토론 및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시기제한 조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당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법익 균형성 원칙도 위반한다며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디어 기술이 언론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도 헌법적 틀 안에서 변화해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부분이다.

16)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17)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18)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90 결정.

종이신문과 비교할 때 인터넷언론은 훨씬 적은 자본력과 시설만으로 발행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에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반론과 토론·교정이 이루어지며, 정보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언론은 국민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략) 인터넷언론의 이와 같은 특성과 그에 따른 언론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언론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서 위주의 사고로 인터넷언론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언론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언론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언론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 수단 또한 헌법의 틀 안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한다.

새로운 매체 기술이 언론의 자유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고려해 보건대,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이 언론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에 도움이 되고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언론이라도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규제도 헌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소결을 내릴 수 있다.

### Ⅲ. 언론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도입은 언론인의 취재관행과 원칙에 변화를 초래해왔다. 가령, 유튜브와 소셜 미디어가 기사 배포를 위한 주된 통로가

되면서 언론인에게 과거와는 달리 유명인(celebrity)의 역할이 요구되는 등 언론인에게 기대되는 역할도 변화해왔다(Mellado & Hermida, 2022; Olausson, 2018).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도 언론의 관행과 원칙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언론 산업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 도구를 통해 보도자료나 데이터를 손쉽게 기사로 변환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반면에 그 과정에서 언론인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허위보도 내지 저품질 기사를 양산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툴을 개발할 수 있는 대규모 언론사와 이러한 툴을 개발할 수 없어서 ChatGPT 등 공개된 인공지능 도구에 의존하는 소규모 언론사 간에 저널리즘 품질 차이가 더욱 커지는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언론 현장에서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위험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기자, 아나운서, 앵커, 피디 등 다양한 언론 직군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여러 방송에서 AI 앵커와 AI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있다. 결국 언론 직군의 일자리 상실이 예상되며 저널리즘 산업 전반에 이로 인한 두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국내 지역민영방송이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인공지능 뉴스를 도입하면서 2024년 5월 지역민영방송 노조협의회는 ‘혁신을 가장한 AI 뉴스, 녹화뉴스일 뿐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장슬기, 2024). 방송사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력감축 때문에 남아있는 인력에게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녹화방송을 통해 뉴스 신속성과 지역성도 저하되고 있다고 노조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판했다.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접하는 미디어 이용자들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불쾌한 골짜기’는 모리(Mori, 1970)가 고안한 개념으로서 로봇이 인간과 흡사해질수록 인간이 로봇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는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섬뜩함과 혐오감을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우(Wu et al., 2024)는 5명의 인공지능 앵커를 활용한 실험을 통해 인간 앵커보

다는 인공지능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를 들을 때 피험자들이 더욱 섬뜩함을 느끼고 약한 인간성과 매력을 느낀다는 것을 증명했다. 피험자들은 주로 입모양과 목소리의 불일치, 단조로운 목소리, 같은 동작의 반복 등 비정상적 특징을 불편한 감정의 이유로 지적했다.

인공지능의 언론인 대체 가능성에 대해 경영진과 고용된 언론인 간의 인식차이도 나타난다. 영국과 미국의 30개 미디어에서 보도한 95개 기사를 주제별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언론업계와 직업인으로서의 언론인 간에 인식불일치가 나타났다(Moran & Shaikh, 2022). 즉, 전자는 뉴스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후자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특히 언론업계는 수용자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을 ‘저널리스트’라고 표현하여 의인화를 시도하는 반면에 언론인들은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직업적 위기인 ‘자동화 불안’을 보여주었다.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한 딥페이크와 허위정보의 확산에 대한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허위정보의 확산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적 질서를 해칠 수 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선거 기간 언론이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발표됐다(Sato, 2024).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2024년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성인 2,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언론 매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도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또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언론 매체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할 것이라는 우려는 42%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7%는 언론 매체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44%는 정보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한 보도의 필요성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국내외 언론계는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사를 작성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최승영, 2023). 조선일보는 2023년 12월 AI 기사 작성 어시스턴트를 도입하여 발제문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기사로 작성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024년 1월 말부터 자사 기사를 검색할 수 있는 ‘에스크동아(AskDong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챗봇형 프롬프트에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 기사를 요약하여 추천한다. 동아일보는 이용자 맞춤형 뉴스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해 독자 취향에 맞는 뉴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4년 4월 한국일보는 생성형 AI 서비스 ‘하이(H.AI)’를 도입하여 내부에 공개하고 통합 콘텐츠 제작 시스템(CMS) 허브(HERB)에 이를 추가했다. ‘하이 뉴스룸 도우미’를 통해 기사 작성, 요약, 이미지 생성, 제목 추천, 키워드 자동 추출 등의 기능을 지원하며 각 플랫폼에 최적화된 제목과 요약도 제공한다. 한국일보는 자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한 자체 언어 모델 개발을 준비 중이다. 해외에서도 언론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미디어기업 가넷은 자사 기사 상단에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사 요약인 ‘키 포인트(key points)’를 추가할 예정이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디지털 솔루션 기업 후지쯔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제목 AI, 장문 요약 AI, 교정 AI 등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하고 있으며 기사의 페이지 뷰(PV) 예측이나 관련 기사 제시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언론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언론인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한다. 호주,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 미국의 7개국 사진 편집자가 뉴스 조직에서 시각적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진 편집자들이 저널리즘 내에서 텍스트-이미지 생성기에 대해 15가지 우려가 있음이 나타났다(Thomas, et. al., 2024). 주요 우려사항은 1) 오보/왜곡 정보, 2) 노동력 대체, 3) 저작권, 4) 조사 어려움, 5) 알고리즘 편향과 평판 위험 등이었다.

이제 언론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과 그에 따른 우려 속에서 언론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다시금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Porzella, 2023),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하여 윤리적 취재와 보도에 집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23년부터 언론계에서도 자율규제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내외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내용을 찾아보고 그 한계를 살펴본다.

#### IV. 언론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률적 규제보다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더욱 신속하면서도 유연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해외 기술기업이나 데이터 관련 기업들도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주된 요소는 투명성, 프라이버시, 책무성, 안전성이라고 한다(Franzke, 2022; Jobin, et al., 2019). 이하에서는 국내외 언론계에서 저널리즘 원칙을 반영하여 발표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분석한다.

##### 1. 해외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챗GPT(ChatGPT),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등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시점인 2023년을 기점으로 해외에서 발표된 언론 관련 가이드라인을 온라인 검색 및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해외 언론사 및 언론단체가 발표한 22개의 가이드라인 또는 준칙이 수집되었다. 영어 이

외의 언어로 작성된 가이드라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번역했다. 2차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해외 가이드라인이 파악되었으나, 원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및 정확한 번역이 어려운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집 결과,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준들은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었다. 언론사별로는 ‘가이드라인’(Ringier, Mediahuis), ‘원칙’(New/Media Alliance, CNET, dpa), ‘편집자로부터의 편지’(Financial Times, Reuters), ‘접근법’(The Guardian), ‘약속’(Le Parisien). ‘현장’(RSF), ‘정책’(Aftonbladets)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특정 명칭 없이 단순 게시글(Wired, Business Insider) 형태를 취하기도 했다. 해외의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분량 면에서도 차이가 컸는데, 간단하게 원칙을 선언하는 형태부터 미디어 기술발달의 역사와 배경까지 부가적으로 설명한 장문의 가이드라인도 있었다. 수집된 해외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작성주체, 국가, 발표일자,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1 참조).

<표 1> 해외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

언론사/단체	국가	발표일자	주요 내용
Algemeen Nederland Persbureau (ANP)	네덜란드	2023.3.1.	민주주의 원칙과 저널리즘 관행 중시, 사람 감독, AI 생성 텍스트/이미지/오디오 게시를 위한 편집장 허가, 책무성, 투명성
Deutsche Presse-Agentur (dpa)	독일	2023.4.3.	저널리즘 가치 반영을 위한 5가지 원칙: 개방적 활용, 인간 감독, 윤리적 원칙(자율성, 공정성, 민주적 가치), 안전성과 인간 책임, 활용 권장(투명성, 개방성, 문서화)
AftonBladet	스웨덴	2023.4.5.	4가지 일반정책: 제한적 활용, 인간 감독, 투명성, 맞춤형 알고리즘 활용
Heidi.News	스위스	2023.4.8.	인간 감독, 사실 확인, 투명성

VG(Verdens Gang)	노르웨이	2023.4.12.	5가지 원칙: 신중한 사용, 사용 전 승인, 사실적 이미지 생성 금지, 라벨링, 승인된 자료만 AI 서비스에 입력
Business Insider	미국	2023.4.14.	사실 확인, 표절 주의, 제한적 활용(스토리 개요 생성, 오타 수정, 인터뷰 질문 아이디어)
News/Media Alliance	미국	2023.4.20.	AI 원칙: 지식재산권 보호,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안전성, 설계
Deutscher Journalisten-Verband(DJV)	독일	2023.4.	인간 감독, 편집국의 책임,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투명성과 라벨링, 책임 있는 개인화, 인증된 AI 시스템 사용, 지속적 검토, 언론인 훈련과 추가교육, 적절한 보상
Reuters	영국	2023.5.14.	인간 감독, 투명성, 신뢰할 수 있는 뉴스
Nucleo	브라질	2023.5.18.	허용: 텍스트 요약, 긴급한 일러스트 생성, 문구 개선/축약, 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안, 주제 조사. 그러나 전체 콘텐츠 생성, 편집자 대체, 인간의 검토 없는 게시물, 라벨링 위반은 불허
Wired	미국	2023.5.22.	텍스트 생성편집 금지(단, 소셜 미디어 헤드라인과 텍스트, 스토리 아이디어, 연구/분석도구로는 사용가능), AI 생성 이미지·동영상 제한적 사용(투명성)
Le Parisien	프랑스	2023.5.24.	2가지 사용범주: 텍스트 생성(투명성), 이미지동영상 생성(투명성, 인간 감독)
Financial Times	영국	2023.5.26.	인간 감독, 투명성, 책임성, 언론인 교육
Ringier	스위스	2023.5.30.	인간 감독, 라벨링, 개인데이터/영업비밀 입력 불가, 저작권 보호, 공정성과 비차별
CBC	캐나다	2023.6.12.	인간 감독, 사실 확인과 검증, 투명성, 편집국 허가, 취재원 보호, 기밀과 비공개콘텐츠 입력금지
MediaHuis	벨기에	2023.6.14.	저널리즘 품질 향상, 투명성, 인간 참여, 공정성/비편향, 투명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The Guardian	영국	2023.6.16.	사용 여부 관련 3가지 원칙: 독자 이익을 위한 사용(인간 감독, 편집자 허가), 조직 이익을 위한 사용(업무 품질 향상), 콘텐츠 제작자 존중(허가, 투명성, 공정한 보상)

STT	핀란드	2023.6.22.	신뢰성, 정보 보호, 투명성
CNET	미국	2023.6.	2가지 원칙: 사실 확인, 타인의 창작물 존중
Associated Press(AP)	미국	2023.8.16.	인간 감독, 사실 확인, 기밀정보 입력금지, 주의의무
Hong Kong Free Press(HKFP)	홍콩	2023.10.17.	뉴스생성 원칙적 불허이나 제한적 사용 가능(문법/맞춤법 검사, 텍스트 재작성/요약, 번역, 연구, 스토리/인터뷰 질문 아이디어, 코딩)
RSF(Reporters sans frontières)	유럽연합	2023.11.10.	파리 헌장: 언론윤리 준수, 인간판단 우선, 사전평가, 책무성, 투명성, 출처공개, 다양성, 진실성

해의 가이드라인은 각자 다른 용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을 거쳤기 때문에 용어나 단어별로 사용횟수나 비중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조항에서 중첩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가령 ‘활용범위’에 대한 조항에서 ‘투명성’이나 ‘표시의무’를 지우거나, ‘인간의 감독’을 강조하면서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주요내용을 뚜렷하게 분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주요 내용을 큰 틀에서 분류해보면 (1)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원칙 보호,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범위 제시, (3)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4) 투명성과 라벨링 표시 의무, (5) 타인의 창작물 보호, (6) 공정성과 비편향성, (7) 데이터와 영업비밀 보호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해당 언론사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원칙 보호

대부분의 가이드라인들은 민주주의 수호 및 저널리즘 원칙 준수에 대한 규정을 서문 또는 본문에 담고 있었다. 가령,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2023년 11월 발표한 ‘AI와 저널리즘에 대한 파리 헌장’ 서문에서 ‘사

회와 개인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언론 매체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선언했다. 또한 국경없는 기자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언론매체를 만들기 위한 언론계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독일 기자협회(DJV)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중하고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널리즘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여론 형성과 의사 결정,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널리스트의 업무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의 사용은 자유 민주주의나 저널리즘 직업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도로교통에서 자율주행차량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듯이 저널리즘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사용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은 윤리와 가치 체계와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저널리스트가 항상 수행했던 감시자 기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독일 언론사 dpa도 합법적인 인공지능만 사용할 것이며 인간의 자율성, 공정성, 민주적 가치와 같은 윤리적 원칙을 충족하는 인공지능만 활용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혔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의 시대에 '최고 수준의 저널리즘을 생산한다'는 사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생성 및 확산되고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투명하게 사실을 보도하며 진실을 추구해야 할 더 큰 책임을 진다며 저널리즘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미국 인사이더(Insider)는 저널리스트가 미디어 기술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항상 활용해왔음을 강조했다. 즉, 공중전화와 그 이후 발명된 휴대폰과 스마트폰, 노트북의 맞춤법 검사 워드프로세서,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언론인은 기술적 진화를 활용해왔고, 인공지능은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기에 뉴스룸은 인공지능 활용법을 익

혀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은 인공지능 활용에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소스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어떤 도구를 활용하든 간에 기사의 정확성, 공정성, 독창성, 품질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요약하자면,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언론 자율규제 측면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언론윤리와 저널리즘 원칙은 가이드라인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언론의 근본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범위

해외 가이드라인 중에는 기사 작성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 예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여러 가이드라인들이 허용범위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어서 구체적 허용범위를 설정하기에 언론사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활용의 허용범위에 대해 규정한 언론사들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언론사 르 파리지앵(Le Parisien)은 저널리스트 작업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강, 연구 또는 종합 도구로서 인공지능 생성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저널리스트는 검색 엔진을 활용하듯이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 언론사 VG는 보도사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그래픽·모델링을 생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공지능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 편집자의 구체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신문사 아프톤블라데트(Aftonbladet)는 조사, 브레인스토밍, 헤드라인 제안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은 허용했다. 그러나 모든 이미지(동영상, 정지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등)는 사진작가나 이미지 에이전시가 촬영하거나 사람이 직접 제작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국 가디언(Guardian)은 대규모 데이터 세트 조사, 마케팅 캠페인을 위한 아이디어 탐색,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단축 등의 업무 품질 향상을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공영방송 씨비씨(CBC)는 표준 사무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탐사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 기반 식별도구(얼굴 인식, 음성 매칭 등)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물의 목소리나 모습을 재현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했다. 신원 보호가 필요한 비밀 취재원의 목소리나 모습을 생성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음성 변조, 이미지 블러, 실루엣 표시 등의 기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와이어드(Wired)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가 포함된 스토리 게재를 금지하고, 단문요약문(스니펫) 작성과 기사 요약에도 활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현재의 인공지능 도구는 오류와 편향을 발생시키며 종종 독창적이지 않은 둔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글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인공지능 도구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인공지능 활용을 공개하지 않고 출판용 텍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당사는 이를 표절로 간주하겠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짧은 소셜 미디어 게시물의 헤드라인이나 텍스트를 추천받거나, 스토리 아이디어 생성, 연구나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미국 인사이더(Insider)는 까다롭고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예전 기사를 요약하고 배울 점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오타

수정, 문구 정리, 스토리 개요와 구조 생성, 인터뷰를 위한 질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경우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전자제품 리뷰로 유명한 미국 씨넷(CNET)은 인공지능이 완전하게 작성한 기사를 아직까지 게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게재할 계획이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기술과 프로세스가 발전함에 따라 정책이 변경되면 이를 공개할 것이라며 규정 변화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씨넷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 일부를 편집자가 편집하고 사실 확인을 거친 후에는 기사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제품 리뷰 및 테스트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신뢰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간 전문가가 리뷰와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게시하지 않을 것이며, 소속 사진작가와 동영상 제작자는 이미지 및 동영상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홍콩 프리 프레스(Hong Kong Free Press)는 원칙적으로 뉴스 작성, 이미지 생성, 사실 확인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없으나, 문법·맞춤법 검사, 기존 텍스트의 재작성·요약, 번역, 전사, 연구 지원, 스토리와 인터뷰 질문 아이디어, 코딩, 수학적 작업 또는 데이터분석을 위해 내부적으로 승인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브라질 누클레오(Nucleo)는 텍스트 요약, 특정 단락의 문구 개선 또는 축약,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 제안, 주제 조사를 위한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종합하자면, 모든 가이드라인이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취재 기획단계에서 스토리나 인터뷰 질문 아이디어를 얻거나 기존 기사를 검색하고 요약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었다. 기사 작성단계에서는 텍스트 및 이미지, 영상 생성에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었으나, 내부 승인 하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일러스트를 생성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탐사보도와 제품 리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실적 이미지

나 음성 생성을 금지하는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기사 작성을 위해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었다. 기사 완성 후 오탈자를 찾거나 문법적 검사를 위한 활용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기사 요약에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부분에는 대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AP와 브라질 누클레오(Nucleo)는 기사 요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와이어드(Wired)는 기사 요약을 위한 활용을 금지했다. 기사 요약은 기사의 핵심적 내용을 결정하는 중심적 저널리즘 행위이므로 이를 인공지능에 전적으로 일임하기보다는 보조적 도구로서만 활용하고 인간 기자나 편집자가 요약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다.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인공지능 활용 범위에서도 강조되었듯이 인간의 감독은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네덜란드 ANP 통신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텍스트, 이미지, 그래픽 또는 오디오는 책임 편집자와 편집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게시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인공지능이 환각으로 인한 오류를 포함할 수 있으며 편견과 편향을 재생산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 활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독일기자협회(DJV)도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위해 인간 저널리스트의 편집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기초 데이터 자료를 조사하고 편집하는 과정과 AI 애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래밍, 훈련,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은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즉, 인공지능의 자동화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사람과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 간의 상호작용은 여전히 중요하며 완전히 자동화된 메시지 작성 및 배포는 피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뢰성은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에 인간이 콘텐츠 선택과 표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져야만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간의 감독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강조되었다. 가령, 캐나다 CBC는 담당자의 사전허가 없이 탐사 저널리즘에 AI 기반 식별 도구의 사용을 금지했으며, 네덜란드 ANP 통신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소스 자료로 활용하는 것조차도 금지된다고 규정했다.

인간의 감독은 책무성과도 연결되었다. 영국 로이터 통신사는 기자와 편집자가 로이터에서 제작하는 모든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의 승인에 전적으로 관여하고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로이터 이름으로 발행되는 기사는 누가 제작했는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로이터 기사이기 때문에 로이터의 편집 윤리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기자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라면 편집 윤리와 기준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의무를 재차 강조했다.

종합하자면, 인간의 감독과 관리 의무는 인공지능 활용에서 필수적 요소이며 기사의 신뢰성, 안전성, 책무성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가이드라인에서 인간의 감독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 수단과 절차에 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가이드라인에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 라. 투명성과 라벨링 표시 의무

모든 가이드라인이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투명성 원칙을 강조했으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표시하는 라벨링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가령, 핀란드 뉴스통신사 STT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자료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항상 스토리에서 이를 명시하고 독자에게 인공지능 활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여론 조사에 관한 기사에서 표본과 오차 범위를 설명하는 것과 유사하다면서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투명성 원칙을 강조했다. 벨기에 미디어그룹 미디어하우스(Mediahuis)는 콘텐츠를 만들거나 수정하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

했다면 항상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 사용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독자가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하고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결과물에는 이용자들이 결과물의 원본 출처를 식별하고 해당 결과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눈에 띄는 저작자 표시가 포함되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콘텐츠를 생성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러한 투명성 원칙의 준수는 인공지능의 오남용과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하이디뉴스(Heidi.News)는 이용자들이 실제 사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설명 목적으로만 합성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사진으로 오인할 수 있는 합성 이미지를 게시하지 않아야 하며, 게시되는 모든 합성 이미지에는 그 출처를 설명하는 표시가 함께 부착되어야 하며, 캡션에는 사용된 인공지능 모델과 제시어가 언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탐사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성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스위스 링기어(Ringier)도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된 콘텐츠에는 원칙적으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인공지능 도구가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라벨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독일기자협회(DJV)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성된 저널리즘 콘텐츠는 출판 매체에 그에 따른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라벨은 콘텐츠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야 하며 크기와 디자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며 기준도 제시했다.

대부분의 해외 가이드라인은 인공지능을 활용했다면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는 투명성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다. 디지털 시대에 저널리즘 원칙 중에서도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으며, 향후 인공지능 활용과 더불어 투명성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사 작성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이를 밝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언론 현장에 혼선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 상당부분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작성했다면 당연히 이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벌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작성한 다음에 기자가 팩트체크를 통해 추가적 사실관계를 더하거나, 기자가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장을 전체적으로 수정하였다면 이를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이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인공지능 활용이 장차 기사 작성과정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이를 일일이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을지도 우려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라벨링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은 구체적 표시기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기자협회(DJV)가 라벨의 위치와 크기, 디자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나 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캡션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표시방법에 대한 언론계 내부의 혼란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자세하게 표시방법을 규정할 경우 언론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마. 타인의 창작물 보호

해외 가이드라인은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언론사들이 생산한 기사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하는 대규모 인공지능 기업들을 겨냥하여 창작물 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측면이다. 둘째, 언론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생성에 있어서 타인의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부분이다.

특히 전자의 경우, 국제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은 회원

언론사들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자와 배포자는 콘텐츠에 대한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권리에는 콘텐츠 제작자와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저작권 및 기타 모든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퍼블리셔가 콘텐츠의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계약상의 제한, 온라인서비스 약관에 의거한 제한이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자와 배포자뿐만 아니라 입법자, 규제기관 및 법률과 정책 입안자들도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언론사들은 개발자의 지식재산권 사용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얻기 위해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반면, 독일기자협회(DJV)는 후자의 입장에서 언론사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원천이 되는 콘텐츠 저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기본 데이터 및 콘텐츠의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입법자가 출처표시 의무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촉구하여 법률적 제도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생각건대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에서 창작물 보호 규정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웹크롤링을 통해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반된 두 개의 입장이 있다. 수집된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입장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이용 원칙(fair use doctrine) 또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을 적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기업이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를 무제한으로 대가없이 활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정당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하되 언론사도 타인의 저작물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이를 침해하거나 표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 바. 공정성과 비편향성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콘텐츠가 내용면에서 불공정하거나 시장경제면에서 불공정할 수 있음을 언급한 가이드라인들도 있다. 가령, 벨기에 미디어하우스(Mediahuis)는 AI 시스템의 편향성을 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저널리즘, 상업적 목적, 이용자들의 목표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스위스 링기어(Ringier)는 자사가 활용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체 인공지능 도구와 기술은 정기적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제뉴스미디어연합(News/Media Alliance)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거나 불공정한 경쟁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경쟁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설계, 배포, 사용되도록 규제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다. 개발자와 배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이 반경쟁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강조했다. 온라인 콘텐츠 배포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콘텐츠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작자의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경쟁법 위반의 증거로 간주되어야 하며, 규제 당국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반경쟁적 활용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이나 혐오표현(hate speech)을 학습하여 이를 확대 및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한국에서도 2021년 ‘이루다’ 챗봇 사건이 발생했었다. 딥러닝 기반으로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 100억 건을 학습한 ‘이루다’ 챗봇이 사회적 소수자, 여성,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을 쏟아내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의 혐오표현 논란, 페이스북의 유색인종 혐오를 조장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이 논란이 되었다. 2023년 3월 네이버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슷한 주제의 기사를 묶어서 제

공하는 에어스(AiRS, AI Recommendation System) 뉴스서비스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기사제목 제목으로 제공하여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이주빈·정인선, 2023). 기사 생산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혐오표현이 담길 수 있음에도 많은 가이드라인들은 혐오 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아서 향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 데이터와 영업비밀 보호 등

생성형 인공지능은 투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만큼 언론사에서 인공지능 도구에 투입하는 데이터 관련 프라이버시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을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하고 있다. 독일기자협회(DJV)는 편집팀이 사용된 데이터 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데이터 수집, 준비 및 처리 과정에서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데이터 자료의 불완전성과 왜곡 및 기타 오류는 즉시 수정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관련 데이터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디어 기업이 자체 가치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였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은 오픈 데이터 프로젝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상업적 빅테크 제공업체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스위스 링기어(Ringier)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때 기밀 정보, 영업비밀 또는 개인 데이터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AP 통신사와 캐나다 CBC, 핀란드 STT도 기밀 또는 민감한 정보, 비공개 정보를 인공지능 도구에 입력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사용과 영향에 대한 지속적 검토,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언론인에 대한 훈련과 추가교육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들도 있었다.

## 2. 국내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

국내에서 공개된 언론 관련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3개가 수집되었다. 첫째, 2023년 12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신문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발표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864개 자율심사가입 회원 언론사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1) 인간 중심, (2) 정확성, (3) 투명성, (4) 공정성, (5) 권익보호의 5가지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3대 규범과 10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대 규범은 (1) 기사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지만 날씨, 스포츠, 재난, 금융 등 데이터 또는 사실만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되며, (2) 인공지능 기술은 기사 작성과 배포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눈에 띄도록 활용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기사책임자 성명 명시를 요구했으며, (3)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보완적으로 사용할 때는 투명성과 표시의무를 준수할 것을 규정했다. 10개의 가이드라인은 세부적 설명에 관한 것인데 특히 인공지능 활용 범위로서 기사 오탈자 체크, 기사 작성 아이디어 얻기, 데이터 분석도구, 대량정보 정리, 요약 텍스트 생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둘째, 2024년 4월 4일 한국일보가 국내 개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전문 및 8개조, 20개항으로 이루어진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발표했다. 한국일보 뉴스 스탠다드실은 2023년 12월부터 자료조사를 거쳐 뉴스룸 국·신문국·노조 대표로 구성된 ‘생성형 AI 활용 준칙 TF’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스탠다드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준칙은 전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때도 저널리즘 원칙과 가치는 준수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8개조는 책무성(제1조), 인간의 감독(제2조), 허용 범위와 제한(제3조), 투명성(제4조), 다양성과 포용성(제5조),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제6조), 신뢰성 제고 책임(제

7조), 기술 적용과 준칙개정(제8조)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3조는 허용 범위와 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① 허용 범위: 생성형 AI는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기획과 자료 조사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뉴스 제작 △기사 분류, 연관기사 검색, 오탈자 체크 등 뉴스 제작의 보조적 기능 △뉴스이용자 개인화 서비스 등의 언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활용 사실은 제4조 투명성 원칙에 따라 공개한다.
- ② 글쓰기 제한: AI가 생성한 문장을 검토나 수정 없이 보도하지 않는다. 기사는 기자의 독창적 기획·취재·글쓰기의 종합적 산물임을 인식하고 창의적 글쓰기를 생성형 AI로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③ 현실 오인 방지: 현장 보도를 위한 사진·오디오·영상에 생성형 AI를 이용해 어떤 요소를 추가·삭제해서는 안 된다. 인포그래픽 목적 등 필요한 경우 생성형 AI로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으나 그것이 현실을 기록한 것으로 오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실물과 실존 인물 촬영은 언론의 핵심적인 사실 보도 영역임을 인식하고 AI 생성물로 실사를 대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준법·윤리적 실험: 뉴스 제작 목적이 아닌 다양한 실험을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에도 법적·윤리적 기준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

투명성 원칙 준수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1) 문장이나 이미지 생성, 제목 추출, 요약, 번역 등 뉴스 제작, (2) 뉴스이용자 개인화 서비스에 활용한 경우 이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한국일보가 규정했다. 뉴스 생산을 위해 인공지능에 입력한 데이터도 취재원·출처 공개와 같은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개 예외로서 (1) 아이디어 추출, 정보 검색 등 기획과 자료 조사, (2) 기사 분류, 연관기사 검색, 오탈자 체크 등 뉴스 제작의 보조적 기능에 이용한 사실은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뉴스 제작에 활용했다더라도 최종 뉴

스내용에 반영된 정도가 미미한 경우 즉, 기자 바이라인을 넣지 않을 정도의 작업인 경우에는 활용 사실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중앙일보는 2024년 6월 21일 ‘AI 기자의 뉴스 브리핑’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중앙일보 1~5면에 실린 주요기사 본문을 구글 클라우드 AI 기술을 활용하여 200~300자 정도로 요약해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생성형 AI 활용 보도, 이렇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8개의 원칙을 발표했다. 중앙일보의 8가지 원칙은 (1)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장은 반드시 검토 및 수정절차를 거치고, (2)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장은 명시적 표시를 하며, (3) 인공지능 학습에는 확인한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만 사용하고, (4) 개인의 민감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며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고, (5)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6)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을 때 이를 바로잡고, (7) 인공지능 작성 내용이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며, (8) 인공지능 활용 보도에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오류는 바로잡겠다고 규정했다.

이 외에도 경향신문,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사들이 내부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분석대상으로는 삼지 않았다. 3개의 국내 가이드라인의 경우,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원칙과 규범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처음으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회원사인 인터넷신문사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논의의 폭이 제한적이며, 활용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일보는 개별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상세한 인공지능 활용기준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준칙의 가치가 크다. 특히 제정과정에서 언론사 내부 구성원과 노조, 스탠다드실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합의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이 눈에 띈다. 내용면에서도 인공지능 생성물의 편향과 차별, 혐오 가능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안대책과 교육 및 훈련 등을 담고 있어서 해외 가이드라인과 비교해보아도 종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방송사의 경우 아직까지 인공지능 활용 방침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라(Sora), 클링(Kling), 젠-3 알파(Gen-3 Alpha) 등 인공지능 동영상 생성기술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활용하여 논란이 된 만큼(채혜선, 2024) 방송에서의 인공지능 이용기준 제시도 시급하다.

## V. 논의 및 결론

챗GPT를 필두로 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은 저널리즘 관행과 언론 환경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할 전망이다. 저널리즘의 주된 업무가 문장과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생성인 만큼 더욱 빠르고 능숙하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언론 생태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저널리즘 업무 개선에 인공지능이 도움 되리라는 기대감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되짚어보고 의지해야 할 것은 저널리즘 원칙과 언론윤리이다. 저널리즘이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언론의 역할과 기능, 언론 자유의 한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저널리즘 원칙을 되짚어보고,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 의미를 갖게 되는 사법부의 판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언론 관련 국내 판결을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저널리즘 원칙에서 강조되는 감시견 기능과 사실 확인 역할은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에서도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언론의 감시견 기능은 공인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법해석을 통해 강조되고 있었으며, 기자가 사실 확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위법성이 조각되어 언론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 자유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에 목격자 내지 의미부여자로서 보도를 할 때도 언론인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판례를 통해 확립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널리즘 원칙이나 윤리가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언론인을 위해서는 자율규제를 위한 노력의 준거점이자 법원에서는 언론의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작동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저널리즘 원칙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구현되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변함없을 것이며, 인터넷 언론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었듯이 언론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여 언론 자유에 대한 보장과 한계가 본질적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법률을 통한 규제뿐만 아니라 윤리와 원칙을 통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크다. 빠른 기술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입법에 한계가 있기에 유연하고 신속한 규제로서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원칙과 언론윤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은 기본적으로 기자가 보도할 가치가 있는 이슈를 선택하여 사실 확인을 통해 이를 재구성하고 맥락을 전달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저널리즘 과정에서 기자의 관점과 해석능력이 중요하며 끊임없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은 짧은 프롬프트를 입력만 해도 발생사실과 상황, 맥락, 의미, 비평까지 말 그대로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콘텐츠 자동생성기능은 저널리즘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다(구본권, 2024).

생성형 인공지능이 활성화된 시점인 2023년부터 국내외에서 언론사와 언론단체들이 인공지능 관련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감의 표명이자 저널리즘 본질을 고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해외 언론의 22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명칭과 내용, 분량 측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주요내용으로는 (1) 민주주의와 저널리즘 원칙 보호, (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범위 제시, (3) 인간의 감독과 사실 확인, (4) 투명성과 라벨링 표시 의무, (5) 타인의 창작물 보호, (6) 공정성과 비편향성, (7) 데이터와 영업비밀 보호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국내 가이드라인으로는 언론유관단체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1개와 언론사가

발표한 2개의 준칙과 원칙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일보 준칙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론의 인공지능 준칙과 가이드라인은 방향 제시와 제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국내외 준칙들이 저널리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표방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활용의 구체적 허용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현업 종사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 가령, 기사의 맥락이나 구성은 기사의 본질적 내용임에도 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만든다는 것은 저널리즘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기사 요약에 인공지능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론사 준칙들이 상이한 내용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기사 작성의 신속성과 편리함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본질과 언론의 근본적 역할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와 동영상 생성이 보편화되면서 여러 언론 준칙과 가이드라인이 기사 속의 이미지와 동영상 사용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측면이 있다. 여러 준칙들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 투명성 원칙과 표시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허용하고 라벨링을 붙이도록 권장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기사에서 이미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미지가 기사 맥락에 부합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 언론사들도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를 기사 삽화로 활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는데, 이미지가 기사 내용과 맥락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외 인공지능 생성물을 사용하여 백인 이미지를 기사 내에 차용하고 있는 경우도 눈에 띈다. 따라서 생산자 중심의 편의성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여 해당 기사에 이미지가 필요한 것인지, 기사 내용과 맞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나서 이미지 생성여부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명성과 표시의무도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언론의 경우 인공지능 활용여부에 대한 표시가 언론사마다 제각각이다. 기사 작성에 사용된 톨과 프롬프트를 설명하고 생성한 책임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업체와 협업하여 작성하였다’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많은 국내 언론사들이 ‘미드저니를 활용한 이미지’, ‘출처: 달리(DALL·E)’, ‘사진: 챗GPT 생성’ 등으로만 표시하고 있어서 이미지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의 표기법에 대해 언론계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긴 문장으로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 마크를 부착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화 작업도 필요하다.

넷째, 데이터 보호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 언론기업이 빅데이터 기업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압박수단으로서 준칙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론사 기사를 빅데이터 기업이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료를 내는 것은 타당한 일이지만 이 부분만을 강조한다면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향성과는 결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준칙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과 동시에 언론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표절하지 않도록 주의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공지능 준칙 작성에 있어서 현장의 언론인과 이용자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인공지능 저널리즘 준칙을 분석한 다른 연구도 준칙들이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de-Lima-Santos, Yeung, & Dodds, 2024). 인공지능 활용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는 절차 또한 민주적이어야 하며, 열린 프로세스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야 더욱 현실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래는 저널리즘에서 기회이자 위기이다. 인공지능 활용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기에 언론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용하고 저널리즘 본질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이 초래한 저널리즘의 위기 속에서 사법부가 구현한 저널리즘 원칙을 살펴보고, 국내외 언론의 인공지능 관련 준칙과 가이드라인을 조사함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현존하는 인공지능 준칙을 모두 수집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언론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한계도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 이 부분이 보완되기를 제안한다. 이어지는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저널리즘이 본질에 집중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인공지능 시대에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했듯이 언론이 “민주주의 제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본질적 요소”로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 ■ 참고 문헌

---

- 구본권 (2024). 생성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언론중재>, 170권, 63-71.
- 김동환·이준환 (2015). 로봇 저널리즘: 알고리즘을 통한 스포츠 기사 자동 생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9권 5호, 64-95.
- 남재일 (2010). 직업이데올로기로서의 한국 언론윤리의 형성과정. <한국언론정보학보>, 50호, 73-93.
- 박남기 (2020). 인공지능과 윤리적 이슈. <언론정보연구>, 57권 3호, 122-154.
- 백재현·임중수 (2018). ‘혁신 없는’ 로봇 저널리즘: 자동화된 저널리즘의 양식화를 위한 제언을 담다. <방송통신연구>, 103호, 103-136.
- 상윤모·박소영 (2023). 저널리즘 및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분야 윤리 연구 동향 분석- 해외 주요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미디어와 인격권>, 9권 1호, 1-38.
- 신상현 (2023).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미디어와 인격권>, 9권 1호, 39-84.
- 이강형·남재일 (2019). 디지털 저널리즘 현실에 대한 한국 기자들의 수용 태도: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의식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93호, 7-38.
- 이재진 (2005). 언론윤리에 대한 언론과 사법부 간의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6권 1호, 6-32.
- 이주빈·정인선, 하필이면 ‘혐오표현’ 고른 네이버 AI...“기술 탓만 하지 마라.” 2023. 3. 20.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4363.html>
- 이준웅 (2017).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윤리: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적용. <커뮤니케이션이론>, 13권 3호, 86-127.
- 장슬기, 지역방송 내부, AI뉴스 도입 반대 움직임, 2024.5.31. 미디어오늘,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4187?cde=news\\_edit](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4187?cde=news_edit)
- 조소영 (2020). 개별 언론사 언론윤리강령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 검토. <언론과 법>, 21권 3호, 49-92.
- 채혜선. 섬뜩한 이 장면, 알고 보니 AI...‘심야괴담회’ 시청자 게시판 ‘시끌’.

- 2024.7.17.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4223>
- 최승영, 준칙 제정, 톨 개발, 이용비 지원... 언론들 AI 실험 박차. 2024.4.23. 한국기자협회보,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715>
- Kovach, B., & Rosenstiel, T. (2021). *The elements of journalism* (4<sup>th</sup> ed.). 이재경 (역) (2021).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de-Lima-Santos, M. F., Yeung, W. N., & Dodds, T. (2024). Guiding the way: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AI guidelines in global media. <https://arxiv.org/pdf/2405.04706>
- Diakopoulos, N., Cools, H, Li, C., Helberger, N., Kung E., Rinehart, A., & Gibbs, L. Generative AI in journalism: The evolution of newswork and ethics in a generative informative ecosystem. doi: 10.13140/RG.2.2.31540.05765
- Dörr, K. N., & Hollnbuchner, K. (2017). Ethical challenges of algorithmic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5(4), 404–419.
- Franzke, A. S. (2022). An exploratory qualitative analysis of AI ethics guidelines. *Journal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Ethics in Society*, 20(4). 401–423.
- Gates, B. The Age of AI has begun. GatesNotes, March 21, 2023. <https://www.gatesnotes.com/The-Age-of-AI-Has-Begun>
- Jobin, A., Ienca, M., & Vayena, E. (2019). The global landscape of AI ethics guidelines. *Nature Machine Intelligence*, 1(9), 389–399.
- Kerr, R. L., Park, A., & Youm, K. H. (2023). A century of JMCQ legal issues in media: scholarly commitment to free press, free speech, and mor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100(4). 875–900.
- Mellado, C., & Hermida, A. (2022). The journalist on social media: mapping the promoter, celebrity and joker roles on Twitter and Instagram. *Digital Journalism*, 12(4), 494–515.
- Moran, R. E., & Shaikh, S. J. (2022). Robots in the news and newsrooms: unpacking meta-journalistic discourse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journalism. *Digital Journalism*, 10(10), 1756–1774.

- Mori, M. (1970). The uncanny valley. *Energy*, 7(4), 33-35.
- Olausson, U. (2018). The celebrified journalist: Journalistic self-promotion and branding in celebrity constructions on Twitter. *Journalism Studies*, 19(16), 2379-2399.
- Porlezza, C. (2023). Promoting responsible AI: A European perspective on the govern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media and journalism. *Communications*, 48(3), 370-394.
- Sato, M. Newspaper conglomerate Gannett is adding AI-generated summaries to the top of its articles. May 17, 2024. The Verge, <https://www.theverge.com/2024/5/16/24158531/gannett-ai-generated-overviews-usa-today-memo>
- Smith, M. (2024). AI in journalism: how would public trust in the news be affected? April 11, 2024, YouGov, <https://yougov.co.uk/technology/articles/49105-ai-in-journalism-how-would-public-trust-in-the-news-be-affected>
- Thomas, T. J., Thomas, R. J., & Matich, P. (2024). Generative visual AI in news organizations: challenges, opportunities, perceptions, and policies. *Digital Journalism*, 1-22. <https://doi.org/10.1080/21670811.2024.2331769>
- Wu, H., Chen, Z., Huang, Y., & Tu, H. (2024). Research on the uncanny valley effect in artificial intelligence news anchors. *Multimedia Tools and Applic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1-26.

**ABSTRACT**

---

**Journalistic Principles in the AI Era****- Analyzing Court Decisions and Media Guidelines -**

Park, Ahran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Media &amp; Communication, Korea University

The ri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epitomized by ChatGPT, is transforming journalism and the media landscape. Generative AI, which can rapidly and skillfully create content such as text, images, and videos, presents both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journalism. Concerns arise over potential disruptions to the journalism ecosystem, while expectations grow that it could enhance journalistic practices. In this evolving landscape, journalistic principles and ethics are paramount for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media. This study revisits these principles and examines judicial decisions that reflect journalistic ethics. Legal interpretations have underscored the press's watchdog role, justifying exceptions to illegality for public figures. When journalists diligently perform fact-checking, press freedom has been upheld. Moreover, court rulings on internet press freedom indicate that the core guarantees and limitations of press freedom remain unchanged despite the media's use of AI technology.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both legal regulation and ethical self-regulation in the AI era. As laws struggle to keep pace with rapid technological advancements, flexible self-regulation becomes increasingly essential.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22 foreign and 3 domestic

media AI guidelines. Despite variations in title, content, and scope, the main themes across these guidelines include: (1) protecting democracy and journalistic principles, (2) defining the scope of generative AI applications, (3) ensuring human oversight and fact-checking, (4) maintaining transparency and labeling obligations, (5) safeguarding creative works, (6) promoting fairness and unbiasedness, and (7) protecting data and trade secrets. This study also identifies various issues in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media AI guidelines and proposes improvements. It emphasizes that the press must continue to function as a vital component of the democratic system, even in the AI era.

Keywords: Generative AI, Journalism Principle, Freedom of the Press,  
AI Guideline, Watchdog

[ 논문투고일 2024. 6. 25.    논문수정일 2024. 7. 25.    게재확정일 2024. 7. 29. ]

#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분석

-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판례의 분석과 함께 -

이 현 정\*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비전임 교수, 법학박사

진 형 준\*\*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대학교, 법학부 박사후 연구원, 철학박사

## 국문 초록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GDPR 제 17조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온라인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의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선례를 세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알 권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

\* leehyj77@naver.com

\*\* doctorjun71@gmail.com

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M.L. and W.W. v. Germany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공적 접근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주제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잊힐 권리, 유럽인권재판소, M.L. and W.W. v. Germany, 표현의 자유

## 목 차

- I. 서론
- II.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논의
  - 1. 잊힐 권리의 정의와 대표적 판결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
  - 3.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 III. 유럽인권재판소의 M.L. and W.W. v. Germany (2018) 판결
  - 1. 사실관계 및 쟁점
  - 2. 판결의 의의
- IV. 결론

### I.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정보의 전파와 접근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의사소통과 표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명시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RTBF)<sup>1)</sup>는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GDPR, 제17조). 반면 표현의 자유는 대중의 정보 접근과 언론의 자유 보호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유럽인권

1) 과거에는 ‘잊혀질 권리’라고 번역되었으나, 최근에는 ‘잊힐 권리’로 사용된다. 이는 한국어 문법 규칙에 근거하는 것으로 ‘잊혀질’과 ‘잊힐’의 차이는 문법적으로 ‘잊히다’의 활용 형태에 있다. ‘잊혀지다’는 피동형 접사 ‘-지다’를 사용한 표현으로, 실제로는 잊혀진다는 행위 자체를 더 명확히 드러내지만, 불필요하게 긴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한국어 문법에서는 보다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잊히다’는 본래의 피동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잊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잊힐 권리’라 칭한다.

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제10조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긴장은 현대의 법적 담론에서 반복되는 주제 중 하나이다. 인터넷의 발전은 표현의 자유의 신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을 키웠다. 인터넷에서 이 두 권리의 충돌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이부하, 2022). 왜냐하면 인터넷 정보들의 대부분이 사적 영역에서 생산, 유통, 이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역할은 공적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번 인터넷에 유통된 정보는 삭제가 어렵고 거의 영구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시대는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유통되는 방식에 혁신을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전례 없는 연결성과 정보 접근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 통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관련성이 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정보의 원래 맥락이 지나간 후에도 개인의 평판과 사생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디지털 발자국의 지속적인 영향을 다룬다.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사용, 공유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정보 침해, 감시, 무단 처리가 만연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중요성, 도전 과제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와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CJEU)<sup>2)</sup>

의 여러 중요한 판결은 이 두 권리 사이의 균형을 다루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서, GDPR 제17조 제3항에는 삭제할 권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표현과 정보의 자유, 공중보건 분야의 공익, 또한 연구, 통계 목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로서 다양한 국제 협약과 각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반면, 잊힐 권리는 개인에게 디지털 발자국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온라인 정보의 장기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완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정보의 투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원칙과 잠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De Hert, P., & Papakonstantinou, V., 2012).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은 프라이버시의 본질, 디지털 공공 영역에서 기억의 역할, 그리고 인터넷 중개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Simitis, S. 2010). 잊힐 권리는 유럽연합의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 따라 개인이 온라인에 남겨진 자신의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 권리는 2014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Google Spain 사건에서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에 입각한 시민의 사회참여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미디어는 대중이 다양한 정보와 관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시장을 촉진한다.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와 같이 다른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형

2)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유럽인권협약에 명시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유럽 평의회 회원국 전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국제재판소이고,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경제 정책, 경쟁, 내부 시장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EU 법에 초점을 맞추고 EU 회원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EU 재판소로 두 개의 다른 재판소이지만 잊힐 권리와 관련하여 두 법원 모두 중요한 판결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두 재판소를 모두 언급한다.

량을 통해 기본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이부하, 2017). 일반적인 법체계는 이러한 상충하는 권리 간의 충돌을 중재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McCruden, C. 2008), 이러한 메커니즘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사안이 가지는 구체적인 맥락(context), 목적, 비례성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제공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명성, 책임성, 자유로운 아이디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프라이버시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법적 및 윤리적 심의에서 상황에 민감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중 주목할 만한 사건은 청구인들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M.L. and W.W. v. Germany*(2018) 판결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 맥락과 투명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대중의 알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sup>3)</sup> 이 논문에서는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유럽인권재판소의 *M.L. and W.W. v. Germany* (2018) 판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포괄적인 규범 분석은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담론에 기여하고, 점점 더 상호 연결되는 세상에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킬 수 있는 논거로 작용할 것이다.

3)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로는 국회의원의 범죄 기록에 대한 정보 접근 요청과 관련하여 공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기본권임을 판시한 *Tarsasag a Szabadsagjogokert v. Hungary* (2009, application no. 37374/05)와 비정부기구(NGO)가 세르비아 정보 기관의 전자 감시에 관한 정보 접근을 요청한 사안에서 유럽인권재판소가 NGO의 손을 들어주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보를 받을 권리가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한 *Youth Initiative for Human Rights v. Serbia* (2013, application no. 48135/06) 등을 들 수 있다.

## II.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규범적 논의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그 초점과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잊힐 권리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전체적인 개인정보의 통제 및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잊힐 권리는 특정 조건에서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GDPR, 제17조)인 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원칙으로 볼 수 있다(Solove, 20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동의를 필요하며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권리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논의의 배경을 소개한다.

### 1. 잊힐 권리의 정의와 대표적 판결

잊힐 권리(RTBF)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거나 연관이 없거나 과도한 경우에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개념은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JEU)에서 중요한 판결을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 판결은 Google Spain SL과 Google Inc.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세웠으며,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에도 영향을 미쳤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sup>4)</sup>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불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

4) 해당 가이드라인은 유럽 데이터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https://www.edpb.europa.eu/our-work-tools/our-documents/guidelines/guidelines-52019-criteria-right-be-forgotten-search-engines\\_en](https://www.edpb.europa.eu/our-work-tools/our-documents/guidelines/guidelines-52019-criteria-right-be-forgotten-search-engines_en))

제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김민정, 2015). 또한, 학술적인 관점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보사회에서의 기본권 간의 정서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지적되며, 이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김송옥, 2015).

잊힐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잊힐 권리는 일종의 삭제 요구권의 확장된 개념이면서 기존의 사실이 변경된 경우 알려진 사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로도 본다(조소영, 2012). 우리나라에서 잊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설, 새로운 기본권설, 정보프라이버시권설, 잊힐 권리 부정설, 혼합된 기본권설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고, 대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이해된다(이부하, 2017). 그러나 만약 정보 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무한정 유통, 공개, 이용 등을 규제할 수 있다면 여타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규범들이 실질적으로 형해화될 수 있는 문제를 안게 된다(박경신, 2016). 따라서 모든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대해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잊힐 권리는 개인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디지털 시대에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중요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으며(GDPR, 제16, 17조),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프라이버시 개념과도 일치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Westin, A. F. 1967).

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는 복잡한 역학 관계를 형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여 투명성, 책임성, 공적 담론을 뒷받침한다(Hoven, M. 2012). 그러나 동시에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오랜 기간이 지난 범죄자의 정보가 교정과 재사회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이경렬, 2021), 권리의 보호 법익이 분명하다. 그러나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공

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잊힐 권리가 사용되는 경우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 전력이 있는 개인이나 공인이 자신의 디지털 평판을 바꾸려는 시도는 저널리즘의 자유와 역사적 기록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Rosen, J. 2012).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Google Spain (C-131/12) 사건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특정 조건에서 개인이 검색 엔진 결과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권리와 대중의 정보 접근권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이후 일반 정보 보호 규정(GDPR)에 통합되어 잊힐 권리로 법제화되었다.<sup>5)</sup> 이 판결은 잊힐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법제화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으며 (Fabbrini, F. and Celeste, E., 2020),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Kulk, S., & Borgesius, F. J. Z. 2018). GDPR 제17조는 개인이 불필요하거나 부정확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이러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8). 유럽의 규제 당국은 인터넷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범죄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과거를 잊는 어려움을 이제는 모든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문제로 간주한 것이다(Rosen, J. 2012).

표현의 자유에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고,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는 개인의 표현 권리뿐만 아니라 대중이 정보를 얻을 권리도 보호한다(ECtHR, Tarsasag a Szabadsagjogokert v. Hungary, App no 37374/05, 2009).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대중의 일반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ECtHR, Autronic v Switzerland, App no 12726/87, 199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정보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보를 전송, 수신

5) GDPR은 2016년 4월 27일 제정되었고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잊힐 권리는 주로 제17조(정보 삭제에 대한 권리, 또는 잊힐 권리)에 명시되어 있다.

하는 방법에도 적용되며, 방법에 대한 제한은 정보를 수신, 공유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는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정보 교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인터넷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ECtHR, Fredrik Neij and Peter Sunde Kolmisoppi v Sweden App no 40397/12, 2013)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ECtHR, Delfi v. Estonia App no 64569/09, 2015).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가 동등한 비중을 가지며(ECtHR, Axel Springer AG v Germany App no 39954/08, 2012), 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우위에 있는지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적 판단 외에도 윤리적 고려사항은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며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없으면 개인은 지속적인 감시와 잠재적인 조작에 노출되어 자율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손상될 수 있다(Cohen, J.E., 2013). 따라서 개인정보를 소유권의 차원으로만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내 정보를 내 소유물 차원에서만 접근하여 법적인 보호를 주장한다면 규범적 차원의 논의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진실성, 투명성,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므로(Dworkin, R. 1996), 두 권리 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 기업, 법률 전문가, 정책 입안자 간의 협력을 통해 사례별로 세심한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Solove, D. J. 2013).

또한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이 과정이 국가가 아닌 인터넷 플랫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확대된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즉 잊힐 권리는 국가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문재완, 2011).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 잊힐 권리를 통한

정보의 삭제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전면적인 정보인권으로서 잊힐 권리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장진숙, 201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규정의 변화가 기술의 변화를 따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본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osen, J. 2012).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통제의 개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따라서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서로 연결된 두 가지 권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자는 개인이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맞추지만, 후자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룬다. 아래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 2.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 저장 및 활용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는 1983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조사 판결에서 처음 명시되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독일 기본법 제1조(인간의 존엄성)와 제2조(인격의 자유로운 발달에 대한 권리)에 근거한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였다(BVerfG, Volkszählungsurteil, 1983).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을 통하여 자동화된 정보 처리에 내재된 위험성과 개인이 자신의 정보 공개 및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Hornung & Schnabel, 2009).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더 큰 통제권을 요구하도록 자극하고 정보 보호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보 공유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졌다(Hornung, G., & Schnabel, C. 2009).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동시에 개인의 발전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질서와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개인이 사회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지, 심지어 어떤 종류의 정보가 공개되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다면, 그리고 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의 상대방에 대한 지식조차 평가할 수 없다면, 자신의 자유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 보호는 민주 입헌 국가의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제약 없이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민주 입헌 국가는 시민의 참여에 의존하며, 그 정당성은 각 개인의 자유를 보장, 존중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적인 공론장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부여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정보 주체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인격권을 기본법의 일부로 인정해 왔고, 이 권리의 법적 근거는 인간 존엄성 보호(제1조 제1항)와 일반적 개인 자유 보호(제2조 제1항)라는 두 기본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각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형성한다(Hornung, G., & Schnabel, C. 2009). 일반적 인격권 형성을 위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인격권 자체가 부분적으로 인간 존엄성 보호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비록 간접적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정보 보호 사이에는 실제로 연관성이 존재한다(ibid). 개

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헌법적 권리로서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Floridi, 20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립한 원칙은 정보의 책임 있는 사용을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보호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는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권리가 우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은 표준화된 규제 장치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Solove, 2013). 잊힐 권리는 그 적용 과정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공적 담론을 지원하는 표현의 자유 원칙과 종종 충돌한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어느 권리가 우선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익, 정보의 성격, 개인의 사회적 역할, 정보가 게시된 맥락 등과 같은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비로소 균형 잡힌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Rosen, 2012).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이 동의를 통해 정보를 통제하는 개념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복잡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 수집 관행과 그 복잡성은 종종 개인을 압도하여 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 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도구가 부족한 경우 더욱 심화한다(Floridi, 2016, p. 301).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및 규제를 재평가할 필요가 절실하다. 현재의 논의는 정보 중심의 세계에서 정보 관리의 미묘

한 차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솔로브(Solove)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자기 관리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Solove, 2013). 이러한 법적 개혁은 개인정보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의미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대표적인 장애물 중 하나는 개인과 대규모 정보 중심 주체 간의 권력 불균형이다. 일부 기업들은 광범위한 자원과 첨단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의 통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 상업화할 수 있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은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의 개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한다. 개인은 자신의 정보가 수집된 후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의 정보 관행의 불투명성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용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Kokott & Sobotta, 2013).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개입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정보 관행에 대한 투명성 요건 강화, 정보 보호 규제의 강력한 집행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 사용 방식에 관하여 실제로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비윤리적인 정보 관행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 권리의 교차점은 복잡한 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권리들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발하고, 현대적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법률을 재평가하며, 개인과 대규모 기업 간의 권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개인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최근의 비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와 집행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소화된 개인정보 고지, 명확한 동의 절차, 강력한 정보 보호법

집행과 같은 투명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 특히, 건강, 재정 상태, 정치적 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넘어선 예측을 담은 이른바 “추론정보”(Agrawal, A., Gans, J., Goldfarb, A. 2018)의 등장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빅데이터와의 충돌까지 예견하고 있다.

##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련된 규범적 논의

이하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련된 규범적 논의로서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관점과 니센바움(H. Nissenbaum)의 ‘맥락적 무결성’ 이론을 검토한다.

### (1)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청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솔로브(Solove)는 개인정보 침해가 정보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보다는 피해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Solove, D. J. 2006). 개인이 통제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는 ‘핵심 신상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예를 들어, 이혼 후 결혼생활에 대해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실들은 내밀한 것들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밀한 정보가 퍼져나갔다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achels, J. 1975). 프라이버시는 그 핵심에 있는 피해가 정당화될 수 없을 때 프라이버시권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이 법적 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프라이버시권을 주장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는 누군가를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프라이버시권은 그러한 정보의

오용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분실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신원 도용의 가능성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재정적 손실과 평판 손상 등 개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권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한 중요한 보호 장치 역할을 한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발전은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주도되며, 이 권리의 타당성은 피해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는 공익의 효용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사회적 이익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보다 클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익을 우선 시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몇몇 항공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면서 승객 기록을 연방 기관에 제공하였고 이에 대해 한 승객 그룹은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Solove, D. J. 2008). 결론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가 정당화될 수 없을 때 발동되며, 이 권리는 개인정보의 오용, 신원 도용, 사적인 대화의 무단 공개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 법원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공공의 잠재적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균형을 찾아야 한다.

## (2) 니센바움의 맥락적 무결성<sup>6)</sup> (Contextual Integrity) 이론

니센바움(H. Nissenbaum)의 ‘맥락적 무결성’ 이론은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니센바움은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이고 단일하며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정보 흐름의 적절성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단순히 정보의 노출이나 비밀 유출로 보는 대신, 특정 맥락에서의 정보 흐름의 불일치로 이해하는 것이다(Nissenbaum, H. 2004). 니센바움의 이론은

6) 무결성, 완전성 또는 신뢰성으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무결성으로 칭한다.

두 가지 주요 특징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시간이나 장소 등 조건에 독립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필요로 하는 행동의 보편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프라이버시 권리를 민감한 정보와 비민감한 정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정부와 개인이라는 이분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른 정치적 및 법적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적-사적 이분법과도 일치한다(ibid, pp. 125-134). 맥락적 무결성의 중심 원칙은 정보 흐름의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삶의 영역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행위나 사건, 거래는 장소뿐만 아니라 정치, 관습, 문화적 기대의 맥락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맥락은 교육, 정치, 시장과 같은 넓은 범위나 치과 방문, 가족 결혼식 참석과 같은 세밀한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구분은 법적 및 정치적 연구에서 유용한 이분법으로 정의되지만, 프라이버시 규범에 대한 직관은 제한된 맥락에 뿌리를 둔다(ibid, pp. 137-138). 사람들은 다양한 영역을 오가며, 각 영역은 역할, 기대 및 행동을 규제하는 자체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 환경에서는 환자와 의사 간의 정보 흐름이 특정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이 맥락에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는 의사 외에는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반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 공유의 규범이 의료 환경의 맥락과는 다를 수 있으며, 사용자가 게시한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다.

니센바움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정보의 양이나 내용 자체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보가 공유되는 방식과 맥락의 적절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보 주체는 정보가 관련된 개인을 의미하며, 정보 유형은 특정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정보의 종류를 의미한다. 전송 원칙은 정보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전송되는지를 규정하는 규범이다. 각 맥락에는 고유한 전송 원칙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정보 주체와 정보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의 성적 정보가 교사나 학교 관리자에게만 공유되어야 하는 전송 원칙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한다(ibid, pp. 145-1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니센바움의 맥락

적 무결성 이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적절한 맥락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권리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지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부적절한 맥락에서 자신의 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로서 중요하다. 이 이론을 현실 사례에 적용하면 다양한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정보의 온라인 공개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정보 규범에 어긋나지만, 동일한 정보라도 연구 목적으로 익명화되어 사용될 때는 다른 맥락적 규범이 적용되는 것이다(ibid, pp. 148-149).

니센바움의 이론은 프라이버시와 자율성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중시한다.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개인의 자율성을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이는 자기 신체를 통제할 권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ibid, p.149). 이 이론은 정보의 적절한 사용이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각 맥락에서의 적절한 정보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현대 정보 관행이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이익 및 기술적 현실의 균형을 맞추려면 법적 보호, 윤리적 원칙, 적극적 설계 전략을 통합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Nissenbaum, 2010). 니센바움의 맥락적 완전성 이론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규범적 틀을 제시한다. 맥락별 정보 규범의 중요성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및 기술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잊힐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관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수집, 처리, 공유되는 시대에 필수적인 권리이다. 이 권리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개인정보 사용 방법을 결정하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권리의 필요성은 정보 유출, 신원 도용, 감시 기술의 만연으로 인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솔로브 교수의 연구는 단순한 비밀 유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그는 프라이버시 문제는 사회적 관계와 권력 역학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관한 그의 분류법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보 수집, 처리 및 유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솔로브의 통찰은 다각적인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니센바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적 무결성’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개인정보 보호는 정보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 맥락에 따라 적절하게 흐르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맥락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니센바움의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공유되고 사용되는 맥락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잊힐 권리에 관한 규범적 논의는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통찰을 통해 더욱 강화된다. 솔로브가 강조하는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피해는 개인이 평판 손상이나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오래되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해야 할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 니센바움의 맥락적 무결성 개념은 특정 맥락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옹호함으로써 잊힐 권리를 지지하고 한 맥락에서 공유된 정보가 다른 맥락으로 부당하게 유출되어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솔로브와 니센바움의 관점은 이러한 권리에 대한 규범적 논의를 강화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사회적 역할, 권력관계, 맥락적 무결성이라는 시각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이해함으로써 개인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고 적절한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II. 유럽인권재판소의 M.L. and W.W. v. Germany (2018) 판결

이하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2018년 판결인 M.L. and W.W. v. Germany 판결의 사실관계 및 쟁점, 판결의 의의를 살핀다.

#### 1. 사실관계 및 쟁점

M.L.과 W.W.는 1990년대 초 독일에서 유명 배우 발터 세들마이어(Walter Sedlmayr)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M.L.과 W.W.는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는 자신들의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사회 재통합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과거 범죄에 관한 기사가 검색되어 사생활과 개인 보안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검색 엔진 결과에서 이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L.과 W.W.는 독일 법원에 Google과 다른 미디어 기관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이 검색 결과에서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독일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알 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이 여전히 공공의 관심사이며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M.L.과 W.W.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였다.

M.L.과 W.W.는 자신의 과거 범죄에 관한 기사가 지속해서 공개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른 사생활 및 가족생활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범죄 기록의 디지털 영속성이 자신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사회 복귀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은 인터넷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잊힐 권리의 필요성을 다룬다. 언론 단체들은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해당 보도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심각한 범죄와 그 가해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과거 기록에 대하여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Tambiana Madiega, 2019).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생활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이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M.L.과 W.W.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대중이 과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평가하였고, 사건으로부터의 시간적 경과, 현재 시점에서의 공익성 정도, 범죄에서 개인들의 역할, 그리고 전파된 정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였다.

## 2. 판결의 의의

유럽인권재판소는 독일 법원이 상충하는 이익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찾았다고 결론을 내리며 기사가 계속 게시되는 것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특히 심각한 형사 범죄와 관련하여 대중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M.L.과 W.W.는 재심 시도와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공적 관심사에 다시 등장했

기 때문에 익명성을 기대하기는 이미 어려웠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정도, 정보 주체의 유명도, 언론과의 접촉 여부 등을 고려하였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맞으며 역사 연구와 민주적 토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Dirk Voorhoof, 2018).

이 결정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특히 과거의 사건이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경우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 원칙을 강조하였다. M.L.판결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이익형량에 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여 공익과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례이다. 이 판결은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및 공익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데 내재된 복잡성을 다룬다. 개인은 개인의 재활을 위해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자 할 수 있지만, 이는 심각한 범죄와 관련하여 역사적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M.L.판결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와 잊힐 권리의 한계에 관한 법적 논의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역사적 기록 보존이라는 집단적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Zuiderveen Borgesius, F. J. 2014), 잊힐 권리와 역사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보존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잘 나타낸다.

청구인들은 범죄 기록의 디지털 영속성이 사회 재활과 재통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말소하거나 익명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신원을 통제하고 과거 행위에 대한 대중의 끊임없는 감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개념적 토대와도 일치한다(Rosen, J. 2012). 반대로 관련 언론사들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 접근권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한 형사 절차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고려할 때 문제의 기사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점은 정보에 입각한 시민을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역사적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다(Barendt, E. 2005)고 하겠다.

M.L.판결은 잊힐 권리에 대한 광범위한 담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이 판결은 특히 심각한 범죄 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계와 조건을 보여준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오래되거나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옹호하지만, 이 사건은 이러한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 기록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공공의 이익과 비교하여 형량하여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사생활 권리와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다룸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중요한 점은, 사생활 권리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를 폭넓고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접근을 선호하여, 기술 발전을 포함한 새로운 상황에서 제8조의 보호를 적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살아있는 도구 교리(Living instrument doctrine)”<sup>7)</sup>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의 조건에 비추어 협약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사생활’이라는 용어는 보다 동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시간이 지나도 관련성과 효과를 유지하도록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Zuiderveen Borgesius, F. J. 2014).

M.L.판결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잊힐 권리와 정보에 대한 대중의 권리 간의 긴장을 강조하고,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이익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과거 범죄 기록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공적 담론과 이해에 이바지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익을 제공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판결은 역사적 또는 저널리즘적 가치가

7) 1994년, Dean과 Toohey JJ는 헌법을 창시자들의 죽은 손에 의하여 그 해석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있는 도구(living instrument)’ 또는 ‘살아있는 힘(living force)’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Goldsworthy and Huscroft, 2018, p.201)

중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잊힐 권리가 공익적 고려 때문에 무시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 IV. 결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에 속한다. 유럽인권재판소의 M.L.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대중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이 수행해야 하는 복잡한 이익형량 과정을 보여준다. M.L.판결은 특히 역사 및 저널리즘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익적 고려사항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함으로써 잊힐 권리의 한계를 명확히 설명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디지털 존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라이버시 권리의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지만, 그 실행은 공공의 이익과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균형 잡기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투명성을 모두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일인지 잘 보여준다. 디지털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잊힐 권리에 관한 규범적 논의는 현실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지속해서 기본권의 침해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고 아울러 현상에 대한 해석도 다양해져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오히려 더해간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 ■ 참고 문헌

- 김민정 (2015),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본 잊힐 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의 성격 및 의의, <언론과 법>, 14권 1호, 219-248.
- 김송옥 (2015), 잊혀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론과 법>, 14권 1호, 249-270.
- 문재완 (2009),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법적 책임 -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권 1-2호, 53-85.
- \_\_\_\_\_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의 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권 2호, 1-37.
- 박경신 (2016), 독일개인정보보호법: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에도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가?, <강원법학>, 49호, 103-137.
- 이경렬 (202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힐 권리, <성균관법학>, 33권 2호, 297-350.
- 이부하 (2017), 인터넷상 잊힐 권리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8권 1호, 287-310.
- \_\_\_\_\_ (2022), 디지털 사회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적 고찰, <홍익법학>, 23권 3호, 139-160.
- 장진숙 (2015), 정보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의 충돌에 관한 논의: 잊혀질 권리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48호, 167-216.
- 조소영 (2012), 잊혀질 권리 -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 <공법연구> 41권 2호, 433-457.
- Agrawal, A., Gans, J., & Goldfarb, A. (2018), *Prediction Machines: The Simpl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rvard Business Press.
- Barendt, E. (2005). *Freedom of Speech*.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J. E. (2013), *What Privacy is For*. Harvard Law Review.
- De Hert, P., & Papakonstantinou, V. (2012). The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placing Directive 95/46/EC: A sound system for the

- protection of individual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8(2), 130–142.
- Dworkin, R. (1996).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Fabbrini, F. & Celeste, E. (2020),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Digital Age: The Challenges of Data Protection Beyond Borders, *German Law Journal*, 21, 55–65 .
- Floridi, L. (2016). *The Fourth Revolution: How the Infosphere is Reshaping Human Re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Fried, C. (1968). Privacy: A moral analysis. *Yale Law Journal*, 77(3), 475–493.
- Goldsworthy, J. & Huscroft, H. G. (2017) Originalism in Australia and Canada: why the divergence? In R. Albert, & D. R. Cameron (Eds.) *Canada in the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Canadian constitution* (pp. 183–2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ornung, G., & Schnabel, C. (2009). Data protection in Germany I: The population census decision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5(1), 84–88.
- Hoven, M. (2012). Balancing Privacy and Speech in the Right to Be Forgotten.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Digest*. Retrieve from <https://jolt.law.harvard.edu/digest/balancing-privacy-and-speech-in-the-right-to-be-forgotten>
- Kokott, J., & Sobotta, C. (2013). The distinction between privacy and data protection in the jurisprudence of the CJEU and the ECtHR. *International Data Privacy Law*, 3(4), 222–228.
- Kulk, S., & Borgesius, F. J. Z. (2018).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Europe*, The Cambridge Handbook of Consumer Privacy.
- Madiega, T., & Nichols, A. M. (2019). *EU right to be forgotten*,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McCrudden, C. (2008). Human Dignity and Judicial Interpretation of Human Right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4), 655–724.

- Nissenbaum, H. (2004). Privacy as Contextual Integrity, *Washington Law Review*, 79(1), 119–157.
- \_\_\_\_\_. (2010). *Privacy in Context*, Stanford Law Books.
- Rachels, J. (1975). Why privacy is important. *Philosophy & Public Affairs*, 4(4), 323–333.
- Rosen, J. (2012). The Right to Be Forgotten, Stanford Law Review Online, 64, Retrieve from <https://www.stanfordlawreview.org/online/privacy-paradox-the-right-to-be-forgotten/>
- Simitis, S. (2010). Privacy—An Endless Debate?, *California Law Review*, 98(6), 1989–2005.
- Solove, D. J. (2006). A Taxonomy of Privac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4(3), 477–564.
- \_\_\_\_\_. (2008). ‘I’ve Got Nothing to Hide’ and Other Misunderstandings of Privacy. *San Diego Law Review*, 44, 745–772.
- \_\_\_\_\_. (2013). Introduction: Privacy self-management and the consent dilemma. *Harvard Law Review*, 126(7), 1880–1903.
- Voorhoof, D. (2018).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L. and W.W. v. Germany,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Council of Europe), URL: <https://merlin.obs.coe.int/article/8329>
- Westin, A. F. (1967).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 Zuiderveen Borgesius, F. J. (2014). *Improving privacy protection in the area of behavioural targeting*. University of Amsterdam.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Guide on Article 8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Updated on 31 August 2020. URL: <https://www.refworld.org/jurisprudence/caselawcomp/echr/2020/en/123516>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2016). Regulation (EU) 2016/67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 (1983). *Volkszählungsurteil* (Census Ruling).
-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utronic v Switzerland*, App no 12726/ 87 (Judgment of 22 May 1990).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arsasag a Szabadsagjogokert v. Hungary*, App no 37374/05 (Judgment of 14 April 2009).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xel Springer AG v Germany*, App no 39954/08 (Judgement of 7 February 2012).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edrik Neij and Peter Sunde Kolmisoppi v Sweden*, App no 40397/12 (Judgement of 19 February 201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lfi v. Estonia*, App no 64569/09 (Judgement of 16 June 2015).

European Court of Justice. (2014). *Google Spain SL, Google Inc. v. Agencia Espanola de Proteccion de Datos, Mario Costeja Gonzalez*.

■ ABSTRACT

---

## Normative Analysi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 Focusing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M.L. and  
W.W. v. Germany* -

Lee Hyun Jung

Adjunct Faculty,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Erlangen-Nürnberg Germany, Dr. jur.

Jun Hyungjoon

Postdoctoral Researcher, Friedrich-Alexander-University Erlangen-Nürnberg Germany,  
Dr. phil.

The advent of the interne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has revolutionized the way we communicate and express ourselves, and poses new challenges to protecting individual privacy. The right to be forgotten, enshrined in Article 17 of the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symbolizes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giving individuals the right to request that their personal data be removed from online platform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balance between these competing rights in the digital ag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the right of individuals to request that their personal data be deleted when it is no longer needed, or when they withdraw their consent. This right aims to mitigate the long-term negative consequences of outdated or irrelevant information online. It came to prominence in 2014 with the Google Spain case, in which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ruled that individuals can request the deletion of their personal data under certain conditions. Freedom of

expression is a cornerstone of democratic societies, ensuring the free exchange of ideas and information. It is protected by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ECHR) and supports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the public's right to know. However, this right must be balanced against the right to privacy, and public interest must be carefully weighed against the potential harm to individual privacy. The digital age has blurred the lin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making it difficult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while protecting privacy. Information shared online can be permanent, making it difficult to control an individual's digital footprint. The case of *M.L. and W.W. v. German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llustrates this conflict, where individuals attempted to remove their criminal records from public access. The case highlights the balance between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privacy rights. As internet intermediaries, search engines and social media platform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management of online information, and protecting online privacy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due to the permanence of online information. Once data is in circulation,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rase it, necessitating legal and ethical discussions about managing digital footprints.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allows individuals to regain control over their personal data. In the digital age, it is essential to balance the protection of personal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Keywords: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M.L. and W.W. v. Germany*, right to privacy, right to be forgotten, freedom of expression

[ 논문투고일 2024. 6. 23. 논문수정일 2024. 7. 23. 게재확정일 2024. 7. 29. ]

##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상 반론보도 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이 수 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 국문 초록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언론법상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도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멀티미디어가 출현한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피해구제는 아직 관련법의 미비에 따라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를 유사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왔다. 더욱이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는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써 저널리즘적 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 법체계나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은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에 있어서 이제는 매체중심적 규정방식을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의 정립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왜냐하

\* sjlee@pac.or.kr

면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응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주제어: 멀티미디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독일 미디어국가협약, 반론보도청구권, 간기의무

## 목 차

- I. 문제제기
- II.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 1. 독일 텔레미디어 관련 입법규제의 헌법적 의미
  - 2. 독일 반론보도 청구제도 개관
  - 3.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 III.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 1.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개요
  - 2.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의 실질적 요건
  - 3. 형식적 요건
  - 4. 반론보도게재의 이행요건
  - 5. 법원예의 권리주장(제20조 제3항)
- IV.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상의 간기외무
  - 1. 개관
  -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 3.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 4. 책임자의 지명
- V. 결론 및 제언

## I. 문제제기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중재법 제1조가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나 언론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 실현수단에 속한다. 하지만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통한 매체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여론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들이 언론중재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구제에 공백상태가 발생하는 작금의 현실은 조직과 절차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 유튜브 채널이나 SNS 등의 공론장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저널리즘적 활동이 매우 활발한 현실을 고려할 때,<sup>1)</sup> 피해자

입장에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의 미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라는 민주주의 관점에서나 국민들의 인격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중재제도를 둘러싼 근래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새로운 미디어융합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언론중재제도의 대상 범위를 유튜브 채널이나 SNS상의 콘텐츠 등 새로운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도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다.

대표적으로 언론사가 운영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팟캐스트, 뉴스큐레이션 서비스, 뉴스펀딩, MCN 등 신생 뉴스플랫폼이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함으로써 언론중재제도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적 주장<sup>2)</sup>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미디어법은 뉴스 개념의 본질적 속성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개념 틀을 디지털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외에 신생 인터넷 개인방송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sup>3)</sup> 등이 제기되기도 한다.<sup>4)</sup>

1) 비근한 예로 전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 씨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 담당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가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하였다. 연합뉴스 2024년 4월 17일자 “‘조국 명예훼손’ 보수유튜버 1천만원 배상 확정” 제하의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417084400004>.

2) 류정호 (2015).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55-56.

3) 오기두 (2016). 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표현의 보호와 규제,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 197.

4) 블로그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언론 기사의 복사나 링크 등으로 정보의 빠른 확산에 기여하지만, 현재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피해의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84; 이밖에도 주로 최근 인터넷 환경의 급변현상을 언급하면서 현행 언론중재법이 전통 미디어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체계와 구제수단으로는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 환경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연구로는 빠르게 바뀌는 뉴미디어 테크놀로지는 언론 개념과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양상이 변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미디어와 관련된 언론 개념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언론과 관련된 법들이 규제와 관련하여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통적 언론 개념에서 논의되어왔던 언론의 자유는 뉴미디어 시대에 수정과 재해석이 필요하며,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에 언론의 자유 및 이와 충돌하는 다른 인격권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sup>5)</sup>

이러한 와중에 언론중재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의 적응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우선 반론보도 청구제도는 피해자에게 무기평등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의 보장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반박기회를 통해서 공정한 여론형성의 공론장을 개방해 놓음으로써 언론보도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진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권 보장에 기여하는 제도보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sup>6)</sup>

그러한 점에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유튜브 채널이나 SNS 등 새로운 미디어 형태에 대해서 과연 반론보도가 가능한지 여부의

---

급증하는 권리침해적 보도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구제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하는 논문으로는 김주연 (2020).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과제 검토, <언론중재>, 통권 제155호, 51; 언론중재제도의 개정과정에서는 특히 '언론'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 동법에서의 쓰임새,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 작동방식을 다각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논문으로는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60.

5) 박아란 (2015).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51.

6) 조소영 (2006).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학 연구>, 제7권 제4호, 162.

문제는 우리의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마주한 현실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송과 콘텐츠에 따라 유사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규제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달리 국내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관장하고 있는 근거법률로서 현행 언론중재법은 여전히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 등 수직적 매체규제모델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론보도 가능성은 법률의 해석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역시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대상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한계로 인해 실무상 적용범위를 유튜브 콘텐츠 제공자(채널·계정 운영자)가 언론사인지, 콘텐츠 내용이 보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 삼아 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미디어법제를 개선하고 멀티미디어에서의 뉴스나 저널리즘적 성격의 콘텐츠 역시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경우 실질적, 구체적 절차보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무상의 구체적 방식과 절차에 대한 접근법이 함께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제안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국내의 논의들 가운데 이러한 연구들이나 비교법적 차원의 고찰 역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의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독일식 모델을 선택하여<sup>8)</sup> 1981년 도입된 이래 수많은 적용과 변천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유독 멀티미디어에 대한 제도개선 부분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의 관련 법제현황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7) 미디어오늘 2022년 9월 6일자 기사 “앞으로 ‘언론사 유튜브’는 언론중재위 조정 대상, 가세연은 ‘유보’”,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15>.

8) 박용상 (1991).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통권 제38호, 21.

생각된다. 나아가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절차 관련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작업 역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실무기준 개선에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평적 규제모델의 채택 하에 연이은 법률개정 과정을 통해 멀티미디어 시대의 매체융합 현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각종 미디어 관련 법제를 정비해 왔다.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의 융합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 자신의 적용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게재의무를 포함한 다양한 저널리즘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새로이 신설된 규정이라기보다는 2007년 3월 1일 동시에 발효된 제9차 개정방송국가협약(RÄndStV)에 따른 기존의 방송국가협약(RStV) 제6장을 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멀티미디어의 저널리즘적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반론보도 제도는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관련 실무 역시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법 내용이나 논의가 국내에 전혀 소개된 바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법적 논의차원에서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MStV) 가운데 반론보도 청구제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국내의 반론보도 청구제도 마련을 위해 올바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방향에 따라 II. 독일의 텔레미디어, 즉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III.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요건, IV.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상의 간기의무에 관한 규정들 및 관련 논의들을 차례로 살펴본 뒤 V.에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의 현황을 진단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에서의 법 개정작업 및 실무기준 도입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II.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문제

### 1. 독일 텔레미디어 관련 입법규제의 헌법적 의미

본 논문이 시도하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 논의는 우선 헌법적 관점에서 왜 멀티미디어에 대해서도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당위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미 1992년 바이엘 결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를 설파한 바 있다.<sup>9)</sup> 여기에서 재판부는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은 개별적인 의견표현을 넘어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총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의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헌법상 의견표현권과 구별되어야 하는 각별한 지위를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전통적인 개인의 의견표현(의견표현권)과 제도적인 의견전파 혹은 의견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데, 의견표현권에 비해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은 민주적 의사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성적 기본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이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가지는 공적 책무가 언급되기도 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출판 등 매체에는 제도적 진흥과 같은 특권이 부여되기도 하는 반면에 저널리즘적 원칙의 준수 의무 차원에서 주의 깊은 진실조사 의무나 특별한 간기의무, 광고제한 등의 책임이 수반되기도 한다.<sup>10)</sup>

<sup>9)</sup> NJW 1992, 1439, BVerfG, Beschluss vom 09-10-1991 - 1 BvR 1555/88.

<sup>10)</sup>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 Berichterstattung, 6. Aufl., § 1, Rz. 32.

다만, 독일 기본법에는 신문, 방송, 영화 등의 매체 이외에 멀티미디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법의 침묵이 멀티미디어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공백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독일 기본법 제5조 제2항이 신문, 방송, 영화라는 전통적 매체를 중심으로 한 현행 보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에는 해당 규정을 신문과 방송이 아닌 미디어자유권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저널리즘 활동 역시 헌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러한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이제 미디어융합이라는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신문, 방송, 영화의 자유권은 통일적인 미디어자유권으로 보는 헌법적 해석이 요구된다고 강조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매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 저널리즘은 이미 해당 콘텐츠의 광범위한 확산효과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신문매체나 심지어 방송매체에 버금하는 영향력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매체규제법이나 각종 미디어 법제에서 등한시 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 미디어 등 개인이 행하는 지속적인 저널리즘 활동을 전문적인 저널리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이 신문 등 전통매체에 부여한 저널리즘 원칙의 준수나 진실한 조사 의무에서 배제하겠다는 논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도 출판 등 미디어계에 주어진 주의의무 등의 원칙들을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12)</sup>

이러한 차원에서 독일의 멀티미디어 규제법에 해당하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역시 제17조 이하에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저널리즘적 원칙에 근거한 특유 규정들을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일의 입법자들

11) Fechner, Medienrecht 21. Aufl. § 12 Rn 8.

12) Wenzel, a.a.O., § 1, Rz. 43.

은 바로 이러한 텔레미디어들 역시 헌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는 출판 등 미디어의 핵심부분에 해당하며, 여기에서의 제공물 역시 개인적 그리고 여론형성에 있어서 탁월한 의미를 가진다는 헌법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3)</sup> 이에 따라 해당 텔레미디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별한 저널리즘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그러한 의무로는 증가된 주의의무(제19조), 확대된 간기의무(제18조) 그리고 반론보도에 관한 의무(제20조)를 들 수 있고, 특별한 저널리즘적 권리로는 정보보호법상의 미디어특권(제23조)과 관청에 대한 미디어법상의 정보청구권(제18조)이 인정된다. 또한 규제법상의 감독이 강력하게 제한되며(제109조), 나아가 온라인 언론인은 증언거부권과 같은 형사소송법상의 특권과 압수제한을 주장할 수도 있다.<sup>14)</sup>

이와 같은 헌법적 당위성의 바탕 위에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독일의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 관련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독일 반론보도 청구제도 개관

국내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우선적으로 주 출판법에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다. 독일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 인격권의 헌법상 보장의 일환으로서 자신에 관한 표현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 개인의 권리로 이해된다. 즉, 누구든지 자신이 제3자에게 그리고 공중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길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관한 해명을 통해 이에 대응할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

13) Lent,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MStV § 17 Rn 6.

14) Lent, a.a.O., § 17 Rn 11.

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은 단지 공적 논쟁의 단순한 객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sup>15)</sup> 이러한 이유에서 반론보도 청구제도는 인격권을 기반으로 한 권리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독일에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은 본래 주 출판법상 구제수단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그 적용영역을 신문이나 출판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미디어국가협약(MStV)이나 주 미디어법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제20조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의 적용대상을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멀티미디어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sup>17)</sup> 반면에 주로 상거래를 비롯한 경제적 관점 및 저널리즘적 기능과는 무관한 개인 간 사적 통신의 관점에서 텔레미디어(Telemedien)를 규율하고 있는 텔레미디어법(TMG)은 반론보도청구 관련규정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상업적 텔레미디어 제공물에 의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상 금지청구 혹은 제거청구권의 적용여부만이 검토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사실주장과 연관성을 가진 개인 혹은 기관이 언론의 발행인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자신이 언론의 사실주장을 통해 피해를 입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해명과 함께 자신에 관한 보도를 반박할 기회를 가진다.<sup>18)</sup>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은 미디어의 권리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정보도청구권 보다 훨씬 덜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단지 사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가능성만을 얻는 것이고, 반론보도 게재 의무자는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야 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게재 의무자로서는 반론보도가 법률에 따라 혹은 판결을 통해 의무 지워진 것이라는

15) Fechner, a.a.O., § 4, Rn 132.

16) NJW 2018, 2250ff, BVerfG(3. Kammer des Ersten Senats), Beschluss vom 9.4. 2018 - 1 BvR 840/15).

17) Fechner, a.a.O., § 4, Rn 133.

18) Fechner, a.a.O., § 4 Rn 134.

내용의 거리두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피해자는 가치분선고절차에서 해당 청구의 위험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반론보도 내용의 진실성 역시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는 단지 반론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반대 입장을 공중에 알릴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에 반해 정정보도청구의 경우는 어쨌거나 언론의 사실주장에 대한 일종의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반론보도청구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반론보도는 통상적으로 정정보도가 이미 행해진 때에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9)</sup>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요건은 매우 엄격한 형식에 따르기 때문에 반론보도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제목 : 반론보도 ② 최초보도에 대한 지적: 모 년 모 일자 모 신문의 ○○○ 기사에 관하여 ③ 최초보도의 재현: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되었다, ④ 반박: 이 기사는 허위이다. ○○라는 사실이 맞다 ⑤ 장소, 일자 그리고 서명 등. 만약 청구권자가 이러한 형식적 요건들 가운데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전체적으로 청구기각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전부 혹은 전무 원칙”의 적용).<sup>20)</sup>

마지막으로 독일 반론보도청구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sup>21)</sup>

〈표 1〉 독일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근거

신문	방송	텔레미디어
- 주 출판법	- 공영방송사의 경우: 주 공영방송법 - 다만 ARD는 ARD-국가협약, ZDF는 ZDF-국가협약 - 민영방송사의 경우: 주 미디어법	-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 단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들에만 있음 - 텔레미디어법(TMG): 반론보도 관련규정 없음

19) Fechner, a.a.O., § 4, Rn 135.

20) Fechner, a.a.O., § 4, Rn 141.

21) Fechner, a.a.O., § 4, Rn 142.

### 3.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특수성

#### (1) 미디어국가협약의 대상으로서 텔레미디어의 의미

우선 독일의 멀티미디어 대상 반론보도 청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 미디어 법제에서 말하는 “텔레미디어(Telemedien)”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의 반론보도 청구제도는 각각의 관할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그 적용대상은 크게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의 전통적 매체와 새로운 멀티미디어를 뜻하는 텔레미디어라는 개념 하의 매체들로 나뉘기 때문이다.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조 제1항은 텔레미디어의 개념을 텔레미디어법(TMG) 제1조와 마찬가지로 “전기통신서비스 혹은 방송이 아닌 모든 전자적 정보 및 통신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미디어, 온라인-샵, 온라인중개서비스, 인터넷뱅킹, e-잡지, 채팅룸, 게임앱, 인터넷-검색엔진, 주문형 비디오, 그 밖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공유플랫폼, 교통 및 날씨 서비스 등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텔레미디어는 원칙적으로 허가와 등록의무가 면제되며, 주사무소 소재지원칙이 적용된다. 즉, 독일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둔 텔레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EU 국가들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될지라도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다.

#### (2) 반론보도 청구대상으로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의 의미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나아가 제17조 이하에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라는 복합적 개념의 멀티미디어를 상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멀티미디어들은 제19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공인된 저널리즘적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텔레미디어들은 신문이나 방송 등 전통적 언론에 준하는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며, 이러한 차원에서 제20조에서는 해당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 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sup>22)</sup>

이와 같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7조 이하의 텔레미디어 관련 규정들은 모든 전자적 발간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텔레미디어 제공물만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에서 관철될 수 있는 반론보도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 역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의 정기간행물 내용 전부 혹은 일부가 재현된 제공물을 포함하는 텔레미디어만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규정은 기존의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를 계수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텔레미디어들은 여론형성에 대한 필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통한 균형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대중매체 성격의 텔레미디어, 즉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운영자만이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sup>23)</sup>

하지만 제20조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지면매체의 온라인판 발행인 외에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개별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sup>24)</sup> 왜냐하면 어떠한 제공물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제공물로 이해될 수 있는지의 정의가 이 개념이 다양한 조항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국가협약(MStV) 자체 내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의 해석을 위해서는 전통적 매스미디어에 상응하는 저널리즘 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해당 텔레미디어의 제공내용이 저널리즘적 활동의 결과물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sup>22)</sup> Eva Lohse, Weber kompakt, Rechtswörterbuch 9. Edition 2023.

<sup>23)</sup> Wenzel, a.a.O., § 11, Rz 346.

<sup>24)</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Wenzel, a.a.O., § 11 Rz 342.

기준으로 요구될 수 있다. 나아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평가적 관점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며, 이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25)</sup>

구체적으로 이를 위한 해석기준으로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기준으로서 보편성(내용상 다양성), 시사성(새로운 정보의 기사), 정기성(정기적 혹은 계속적 업데이트), 공개성(일반적 접근가능성)이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동원될 수 있다.<sup>26)</sup>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기준들 외에도 제공물의 저널리즘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제공물에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미디어 보도를 통해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공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 즉 이러한 저널리즘적 지향성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지 저널리즘 외적인 목적에 기여하는 장식적 부속물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sup>27)</sup> 따라서 저널리즘적 목표설정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널리즘적 텔레미디어 제공을 경제적 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의 텔레미디어 제공이나 개인의 의견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제공물과의 구분이 필수적이다.<sup>28)</sup>

한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이라는 표현에서 하이픈 연결은 저널리즘적이고 편집적, 즉 제공이 두 가지 전제를 중첩적으로 충족해야 함을 의미하며, 저널리즘적 구성이란 제공내용의 선택과 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함을 뜻한다. 한편, 편집을 거친 구성이란 정기적으로 혹은 계속적으로 기사의 선택과 편집 그리고 기사의 통제가 자연인을 통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sup>29)</sup> 결국 정기적인 언론 형태를 갖추고 온라인상에서 전파되거나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든 편집을 거쳐 제작된 서비스의 제공자는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

25) Wenzel, a.a.O., § 11, Rz 346.

26) Lent, “Elektronische Presse zwischen E-Zines, Blogs und Wikis” ZUM 2013, 914 (915).

27) Lent, a.a.O., § 17 Rn 14.

28) Lent, a.a.O., ZUM 2015, 135.

29) Lent, “Besondere Impressumspflichten im Online-Journalismus”, ZUM 2015, 135.

다. 여기에는 기존의 일간신문 혹은 잡지의 온라인-버전 제공자 외에도 가령 tagesschau.de 혹은 heute.de와 같은 거대 방송사의 인터넷 포털 역시 포함되며, 타게스샤우-앱의 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전자적 언론 제공물과 구조상 다르지 않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 밖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0조의 적용가능성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정기성(Periodizität)이라는 표지가 항상 결정적이다. 이때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이 협소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제공 목적이 여론형성 과정에의 참여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대상으로 포섭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sup>30)</sup>

이에 따라 예컨대, E-Books은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특별한 출판의 자유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7조 이하의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제공물에는 속하지 않는다. 아울러 앱북, 포럼, 위키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에서 기업프로필과 같은 상업적 커뮤니티 포럼은 온라인 언론 제공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소셜 네트워크의 개인프로필, 검색엔진, 뉴스모음서비스 등도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이라고 할 수 없다.<sup>31)32)</sup> 반면에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 제공물은 전자적 출판형태의 언론 제공물로 제한되지 않고 주로 시청각적 성격의 텔레미디어 제공물, 방송에 가깝거나 방송유사적 텔레미디어 제공물 역시 포함한다는 점이 우리와 크게 다르다. 예컨대, 비디오 블로그, 비디오 포털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방송과의 구분문

30)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31) Lent, a.a.O., MStV § 18.

32)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미디어자유 보호범위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텔레미디어 제공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E-Books, 앱북 역시 인쇄된 책자와 마찬가지로 출판자유 대상이 되며,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제공, 위키서비스, 포럼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보호범위 하에 놓인다. Lent, a.a.O., ZUM 2015, 135. 각주 13) 참조.

제가 대두될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유튜브 채널 등 시청각 요소가 포함된 텔레미디어 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17조 이하의 저널리즘 원칙에 따른 규율대상으로 포섭될 수 있다는 점이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3) 다른 매체와의 구분문제

텔레미디어 가운데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 가령 전자적 언론 제공물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은 그의 매체특성의 관점에서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과 구별될 수 있다. 따라서 지면매체의 머리기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전자적 언론제공물의 “티저(Teaser)”에 대해서도 그 안에 별도의 독립된 사실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제공물에 대한 반론보도가 고려될 수 있다. 나아가 웹사이트나 앱(App)에 삽입된 비디오 역시 텔레미디어 제공물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실시간 제공형태가 아니라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sup>34)</sup>

아울러 지면매체나 방송과는 달리 텔레미디어에서는 문제된 기사에 대한 수정이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존의 전통적 매체들과 구별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수정이 피해자의 요청 없이 제공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행해진 경우, 이러한 사실만으로 반론보도제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처음부터 탈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최초보도가 저장, 복제 나아가 전파를 통해 확산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원하는 반론보도문의 허용되는 길이의 심사에 있어서도 텔레미디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제공 가능한 공포 공간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매체와 구별된다.<sup>35)</sup>

<sup>33)</sup> Lent, a.a.O., MStV §17 Rn 9.

<sup>34)</sup> Soehring/hoene, a.a.O., §29 Rn 29.124.

#### (4) 텔레미디어의 시각적 표현 및 시청각 요소의 문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구성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의 시청각 요소에 대해서 반론보도청구 행사가 가능한지의 문제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반론보도청구 규정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정기적인 전자적 언론 제공물이 텍스트 외에 시각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주장에 해당하는 이상 반론보도가 가능하다. 이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이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 내용”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면과 온라인 발행의 혼종형태를 취하고 있는 전자적 언론 제공물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 제공물의 시청각 요소, 예컨대 온라인 지역언론 포털 내의 사진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론보도청구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sup>36)</sup>

둘째, 가령 신문-앱에서의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동영상 시청각 요소의 경우 어디까지 반론보도가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때에도 역시 이러한 동영상 시청각 요소를 텔레미디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방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 방송과의 경계문제가 선결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독일의 미디어법제 현황에 따르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단지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영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주 미디어법에서 따로 규율되기 때문이다.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매체분류 기준에 따르면이라도 스트리밍 제공은 각각의 구성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간 시청각 제공물인 경우에는 협약 제2조 제1항 제1문의 방송으로서 분류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면 신문의 디지털판이나 온라인 자매판에 포함된 시청각 제공물이 비실시

<sup>35)</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4.

<sup>36)</sup> Lent, “Aktuelle Rechtsfragen der Gegendarstellung in elektronischen Presseangeboten”, ZUM 2016, 954(957).

간으로 제공되며 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조 제1항 제1문의 텔레미디어에 속하게 된다.<sup>37)</sup>

셋째, 정기적인 라이브-스트리밍을 포함하는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비디오 채널(가령 유튜브 내의 비디오 채널)과 방송과의 경계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러한 유튜브 채널을 방송법에 귀속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헌법상 기준의 관점에서는 방송인지 인터넷 매체인지와 관련해 규제가능성으로서 상이하다는 점에서 복잡한 양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sup>38)</sup>

다만,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소송절차에서는 실무적 이유에서 하나의 제공물이 앞선 행정행위를 통해서 방송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형식적 고찰방식에 따라 제20조상의 반론보도청구권 대상에 속하는 텔레미디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공물을 둘러싸고 방송허가를 둘러싼 행정법상 분류문제와 민사법상 반론보도 청구대상 여부의 문제에서 서로 엇갈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결국 범질서의 통일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sup>39)</sup>

결과적으로 전자적 언론 제공물에 포함된 시청각 요소에 대한 반론보도 가능성은 합헌적 해석차원에서 방송과 신문의 반론보도 사이에 보호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sup>40)</sup>

##### (5) 온라인 기사에서의 독자댓글(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문제

반론보도는 전자적 언론 제공자 자신의 사실주장 외에 언론 제공자에 의해 제기된 제3자의 사실주장을 상대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법리의 인정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기적 출판언론에서 독자투고를 상대로 한 반

<sup>37)</sup> Lent, a.a.O., ZUM 2016, 954(957).

<sup>38)</sup> Lent, a.a.O., ZUM 2016, 954, 957.

<sup>39)</sup> Lent, a.a.O., ZUM 2016, 954, 958.

<sup>40)</sup> Lent, a.a.O., ZUM 2016, 954, 958.

론보도 법리가 참조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가 전자적 언론 제공자의 온라인 기사에 달린 독자댓글에도 과연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sup>41)</sup>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은 제공자가 문제의 사실주장을 공개하기 전에 편집상의 선별과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의 본문내용, “제기된 사실주장”이라는 표현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전자적 언론 제공물에 달리는 독자댓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작업을 통한 편집행위나 사전심사를 행하는 일이 거의 행해지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적 비용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sup>42)</sup> 경우에 따라서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과 함께 키워드 검색을 통한 개별적이고 명백한 명예훼손 개념들을 걸러낼 수 있겠지만, 피해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이익침해로서 평가되고 이때에만 반론보도청구의 행사가 가능한 사실주장에 대해서까지 이러한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통해 걸러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sup>43)</sup>

따라서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독자댓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심사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텔레미디어 제공의 행위의무는 권리침해의 인식 후에 비로소, 즉 피해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고지 이후에 생겨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44)</sup> 이러한 이유에서 독자댓글 내의 사실주장은 반론보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더해 반론보도의 제도상 보호 목적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반론보도는 미디어 이용자와 미디어 제공자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 불균형, 즉 미디어상의 표현이 가지는 대중성과 영향력의 관점에서 존재하는 불균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사

41) Lent, a.a.O., ZUM 2016, 954, 958.

42) Lent, a.a.O., ZUM 2016, 954, 958.

43) Lent, a.a.O., ZUM 2016, 954, 958, 각주36.

44) BGH ZUM-RD 2012, 82,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5. Oktober 2011 - VI ZR 93/10 - OLG Hamburg; ZUM 2012, 566, Urteil des Bundesgerichtshofs vom 27. März 2012 - VI ZR 144/11 - LG Berlin.

실이다. 하지만 독자댓글에 대해서는 피해자 스스로 댓글을 통해 이익침해적 사실주장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밖에 반론보도 게재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전자적 언론 제공자가 댓글서비스를 포기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 역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미디어 제공자의 구성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 제공자의 구성의 자유에는 댓글기능을 통해 온라인 기사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공개하는 것 역시 포함되기 때문이다.<sup>45)</sup>

### Ⅲ.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상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 1.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개요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보장하고 있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기존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를 계수한 것이다.<sup>46)</sup>

45) Lent, a.a.O., ZUM 2016, 954, 958.

46) 제20조 반론보도

(1)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의 전부 혹은 일부내용이 재현된 제공물을 포함하는 텔레미디어 제공자는 자신의 제공 내에서 제기된 사실주장을 통해 관련된 개인 혹은 기관의 반론보도를 자신의 제공 내에서 지체 없이 게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반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비용부담 없이 게재되고 독자들은 추가의 검색이용료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반론보도는 대상이 된 사실주장과 동일한 형태로 첨가와 생략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반론보도는 대상이 된 사실주장이 게재되는 동안 그와 직접 연결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사실주장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거나 반론보도의 게재 전에 제공이 종료된 경우, 반론보도는 원래 제공된 사실주장이 게재되었던 기간만큼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반론보도에 대한 재판박은 사실적 진실로 제한되어야 하며,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2) 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 게재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반론보도에 어떠한 정당한 이익도 가지지 않는 경우,
2. 반론보도의 범위가 대상이 된 사실주장을 부당하게 넘어설 경우,
3. 반론보도가 사실적 제공으로 제한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을 포함

출판법과 방송법은 각각 정기간행물과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협약 제20조는 기존의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에서와 동일하게(이 역시 미디어서비스협약 제14에서 유래) 피해자의 반론권을 특정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로 확대했다.<sup>47)48)</sup>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텔레미디어에 대한 별도의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독자적인 법적 청구근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반론보도청구서가 제공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예컨대, 텔레미디어를 통해서도 자신의 콘텐츠를 전파하는 출판언론사의 경우에는 지면매체와 텔레미디어에 각각 별도의 반론보도청구서가 송달되어야 하며, 각각의 독자적인 법적 요청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반론보도를 통해 반박되어야 할 내용이 동일한 것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sup>49)</sup>

반론보도 게재의무는 금지의무, 취소의무, 손해배상 지급의무와는 달리 미디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하고 진실한 최초보도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이에 허위의 반론보도가 게재될 위험성이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피해자의 반론권은 대상 미디어의 지속적인

하고 있을 경우,

4. 반론보도가 지체 없이, 늦어도 대상 텍스트 제공일자로부터 6주 이내에, 하지만 적어도 제공의 최초입력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그리고 피해당사자 혹은 그의 법적 대리인의 서명 하에 통지되지 않은 경우,
- (3)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론보도청구의 관철을 위해서는 정식의 소송절차가 제공된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가처분선고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청구에 대한 위협이 소명될 필요는 없다. 본안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 (4) 국제의회기구의 공개회의, 연방과 주들의 입법기관 그리고 각각의 주 출판법이 언론법상 반론보도를 제외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과 관청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47) Fiedler,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MStV § 20

48) Sajuntz/Wiggenhor, Hasselblatt, MAH Gewerblicher Rechtsschutz 6. Auflage 2022, Rn 112.

49) Wenzel, a.a.O., § 11, Rz 339.

대중적 영향력으로 인해 정당화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반론권은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통해 개입하는 각각의 미디어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을 통한 개별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며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공표되어야 할 사실적 반박만을 허용한다.<sup>50)</sup>

## 2.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의 실질적 요건

### (1) 언론에 가까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텔레미디어(제1항 제1문)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권의 실질적 전제 조건은 대체로 전통적 매체와 구별되는 다른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제20조에 명시된 텔레미디어(Telemedien)의 특징으로 인해 반론보도가 가능한 미디어, 반론보도의 범위, 비용부담 등의 특별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sup>51)</sup>

신문과 방송에서의 반론보도의무는 자신의 미디어 플랫폼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중매체를 통한 발언권을 제공할 목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개인도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내용을 마음대로 공표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언론의 기사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은 종종 기술적으로 쉽게 반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이유로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제한이 요구될 수 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유사한 발언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동일한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최초보도를 한 매체에서 행해져야 할 반론권의 정당성은 제20조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sup>52)</sup>

<sup>50)</sup> Fiedler, a.a.O., MStV § 20

<sup>51)</sup> Fiedler, a.a.O., MStV § 20 Rn 1.

<sup>52)</sup> Fiedler, a.a.O., MStV § 20 Rn 2.

## 1) 정기적 디지털 언론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형태의 정기간행물 전부 혹은 일부 내용이 재현된 제공물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정기적 디지털신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기적이지는 않더라도 최대 6개월 이하의 간격으로 하나의 섹션 하에 공표되는 모든 디지털 기사모음을 포함한다.<sup>53)</sup>

### a.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판 혹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기사모음

우선, 각각의 개별적 디지털 신문판이나 디지털 잡지판에서 편집된 기사모음 일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아울러 디지털 기사모음이 계속해서 최신기사와 함께 업데이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신문기사가 디지털판에서 통째로 전송되던지 아니면 신문의 웹사이트에서 상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되던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sup>54)</sup>

### b. 혼성형태와 순수한 디지털 언론

그 다음으로 인쇄형태와 함께 디지털형태로 발행되는 혼성형태의 발간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정기적 디지털 언론 역시 포함된다. 이러한 해석은 제20조 제1항 제1문의 “특히”라는 예시적 표현을 통해 포섭대상이 개방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sup>55)</sup>

### c. 비정기적 디지털 발간물과의 구분

이에 반해 비정기적 디지털 발간물인 온라인 북, 에세이, 진단지는 반론보도의무가 없다. 사실주장이 신문기사보다 더 강력하게 피해자와 연

<sup>53)</sup> Fiedler, a.a.O., MStV § 20 Rn 4.

<sup>54)</sup> Fiedler, a.a.O., MStV § 20 Rn 5.

<sup>55)</sup> Fiedler, a.a.O., MStV § 20 Rn 6.

관성을 가지는 유명 저널리스트의 온라인 베스트셀러 서적의 경우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는 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반론보도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sup>56)</sup>

한편, 디지털 언론제공의 정기성(Periodizität) 판단을 위해서는 주 출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면신문의 정기성 판단기준, 즉 6개월 이하라고 하는 재발행 기준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연간보고서는 당연히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발행 사이의 간격이 6개월보다 짧을 경우일지라도 새로운 텍스트가 이성적 독자의 관점에서 일관된 발간의 일부로서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별도의 문서로서 비정기적 디지털 출판으로 보이는지 판단이 필요하다.<sup>57)</sup>

#### d. 정리

신문과 잡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의 디지털판, 즉 혼성형태의 전자적 온라인 제공물은 최소한 6개월 내로만 발행되는 이상 반론보도의무를 지며, 순수한 디지털신문이나 잡지 내지 6개월 이내로 발행되는 온라인 발간물, 즉 해당기사가 신문이나 잡지에서도 함께 발행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기사를 통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러한 제공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전형적인 언론사나 많은 블로그들의 편집적 구성과 축약 하에서 새로운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제공물이나 기업 혹은 프리랜서의 홈페이지에서 특정주제에 관한 보도영역 등이 여기에 속한다.<sup>58)</sup>

인터넷 포털 역시 사실성, 전문적 작업방식 그리고 정기적 발행방식을 통한 일정 정도의 조직적 안정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에 해당한다. 다만, 대규모 청중에 도달되어야 한다거나 제공자가 상업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은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sup>59)</sup>

<sup>56)</sup> Fiedler, a.a.O., MStV § 20 Rn 8.

<sup>57)</sup> Fiedler, a.a.O., MStV § 20 Rn 9.

<sup>58)</sup> Fiedler, a.a.O., MStV § 20 Rn 13f.

이에 반해 정기적 성격이 없는 발행물, 즉 E-Book, 에세이, 디지털연감, 지속적인 보도가 없는 캠페인-홈페이지 등등은 포함되지 않는다.<sup>60)</sup> 위키 서비스나 포럼 역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이라는 전제를 통상 충족시키지 못한다.<sup>61)</sup>

##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주문형 비디오

미디어국가협약 제20조 제1항 제1문의 “특히(insbesondere)”라는 표현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의 유형을 단지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명시된 정기간행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현한 제공물 외에도 순수한 디지털언론이나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사모음 역시 포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에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주문형 비디오 역시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디오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미디어 서비스(미디어 플랫폼) 내에서 제공될 경우에는 당연히 반론보도의무를 지게 된다.<sup>62)</sup>

다만, 제20조의 개별적 반론보도 의무규정은 방송의 반론보도기준과 비교했을 때 시청각 요소의 포섭의도가 뚜렷이 표현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제20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단지 “대상이 된 텍스트”라고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다툼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입법이유서에서는 제20조가 “일반규정”의 장 아래에 위치한 “텔레미디어” 속에 배치되는 새로운 규정방식을 통해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미디어국가협약(MStV)가 모든 텔레미디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제20조에 정기적인 시청각 텔레미디어가 포섭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sup>63)</sup>

59)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60) Fiedler, a.a.O., MStV § 20 Rn 13f.

61)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2.

62) Fiedler, a.a.O., MStV § 20 Rn 15.

이는 구 방송국가협약(RStV) 제56조상의 반론보도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모든 텔레미디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온라인-영화관이나 온라인-비디오텍에서의 다큐멘터리영상물과 같이 독자적 공표물로 보이고 정기적인 미디어의 일부로 보이지 않는 비디오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sup>64)</sup>

### 3) 피청구인

반론보도청구의 피청구인은 사실주장이 제기된 텔레미디어의 제공자이다. 디지털 언론의 경우에는 발행인 내지 이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유한 자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미디어국가협약(MStV)은 주 출판법이 반복해서 규정했던 편집국 책임자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sup>65)</sup>

한편, 텔레미디어 제공자라 할지라도 단순한 호스트-프로바이더의 경우는 반론보도를 제3자의 제공 내에 입력하거나 이를 전달해야 할 어떠한 의무나 권리도 없다. 단순한 호스트-프로바이더는 타인의 콘텐츠를 저장하는 제공자로서 텔레미디어법(TMG) 제10조에 따르면 구체적 내용에 관해 인지한 이후 문제의 정보를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지체 없이 개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sup>66)</sup>

더군다나 어떤 제3자 제공에 대한 접근만을 중개하는 소위 액세스-프로바이더 역시 반론보도의 의무는 없으며,<sup>67)</sup> 이러한 액세스-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지면매체에 있어서 소매상이나 도매상의 역할에 그치기 때문에 반론보도제에 위한 의무부과는 적절하지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sup>68)</sup>

63) BayLT Drs. 18/7640, 91.

64) Fiedler, a.a.O., MStV § 20 Rn 15.

65) Fiedler, a.a.O., MStV § 20 Rn 16.

66) Wenzel, a.a.O., § 11, Rz 344.

67) Fiedler, a.a.O., MStV § 20 Rn 17.

68) Wenzel, a.a.O., § 11, Rz 343.

## (2) 청구인, 최초보도로서 사실주장(제20조 제1항 제1문)

사실주장과 연관된 모든 개인 혹은 기관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인, 인적 결사체 및 기타 인적 그룹 아울러 관청 및 가령 직장협의회와 같은 기타단위가 청구자격을 가진다. 아울러 연관성은 문제의 사실주장이 구체적·개인적 방식으로 청구권자의 권리영역에 영향을 미칠 때를 의미한다.<sup>69)</sup>

한편, 반론보도청구는 단지 사실주장에 대해서만 가능하다.<sup>70)</sup> 그런 점에서 텔레미디어의 사실주장에 관한 어떤 고유한 특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주장은 텔레미디어 제공자의 제공물 내에서 제기되어야 하고, 이것이 자신의 콘텐츠인지 타인의 콘텐츠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나아가 어떤 장소에서 검색가능한지, 문제의 사실주장이 제공자의 제공 내에서 텍스트나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시청각 비디오 혹은 이것들의 결합 형태로 제기되었는지도 상관없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이나 최초 보도에 링크를 걸어 놓은 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헤드라인의 재생 목록, 즉 티저(Teaser)에서도 반론보도청구는 가능하다.<sup>71)</sup>

## (3) 반론보도로서 사실주장(제20조 제2항 제3호)

반론보도는 사실주장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반론보도 내에 의견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제공자는 반론보도청구 전부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 내용측면에서도 반론보도의 사실주장은 최초보도의 반박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장은 마찬가지로 전체 반론보도의 거부에 이를 수 있다.<sup>72)</sup>

<sup>69)</sup> Fiedler, a.a.O., MStV § 20 Rn 18.

<sup>70)</sup> Fiedler, a.a.O., MStV § 20 Rn 19.

<sup>71)</sup> Wenzel, a.a.O., § 11, Rz 353.

<sup>72)</sup> Fiedler, a.a.O., MStV § 20 Rn 20.

#### (4) 예외사유

##### 1) **정당한 이익이 없거나(제20조 제2항 제1호)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제20조 제2항 제3호)**

반론보도청구의 정당한 이익은 첫째, 반론보도가 명백히 허위이거나 법원에서 허위로 확정된 사실인 경우 부인된다. 청구권자에게 명백히 거짓말을 위한 권리는 없으며, 명백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반론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반론보도가 모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도 정당한 이익은 부인된다.<sup>73)</sup>

제공자가 반론보도를 자신의 제공물 내에서 정확하게 게재한 경우에도 통상 추가의 반론보도청구를 위한 정당한 이익은 탈락한다. 이때에는 다만 반론보도가 최초보도와 동일한 이용자층에 도달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되며, 이는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콘텐츠 내에 반론보도를 게재된 경우를 말한다.<sup>74)</sup>

##### 2) **반론보도가 적절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제20조 제2항 제2호)**

반론보도의 범위는 부당하게 최초보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한 판단기준은 주장이 제기된 기사전체가 아니라 문제된 구체적 사실주장이 결정적이다. 다만, 반론보도에서 최초보도의 언급을 위한 공간은 반론보도의 적절범위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원칙적으로 반론보도가 최초보도의 길이와 같을 때 적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좀 더 긴 반박내용 역시 처음부터 배제되지 않으며, 이는 개별적인 모든 사정을 근거로 반박권의 목적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sup>75)</sup>

<sup>73)</sup> Fiedler, a.a.O., MStV § 20 Rn 21.

<sup>74)</sup> Wenzel, a.a.O., § 11, Rz 354.

<sup>75)</sup> Fiedler, a.a.O., MStV § 20 Rn 22.

이때 제20조 제2항의 적절성 제한규정이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일부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반론보도의 공표범위를 지면신문보다 기술적으로 유연하게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무의미한 것으로 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편집기사 내용에 대해 제3자의 반박을 공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미디어자유에 대한 중대한 개입으로서 적절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고,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양만큼 반박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출판본 내용이 그대로 공표되고 전파되는 디지털 신문과 잡지의 경우에는 인쇄판 형태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제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디지털 뉴스매거진에서도 객관적인 적절성의 고려 없이 여러 페이지에 걸친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출판 및 미디어자유 요체는 각각의 미디어 콘텐츠를 스스로 구성하고 이를 독자에게 제공할 자유이기 때문이다.<sup>76)</sup>

### 3) 광고에 대한 반론보도 가능성 문제

단지 상거래에서만 이용되는 광고내의 사실주장은 주 출판법에 따르면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예컨대,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11조 제2항, 작센주 출판법 제10조 제2항 제3호, 베를린주 출판법 제10조 제2항 제1문). 이에 반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에서는 광고에 관한 어떤 명시적 예외조항을 발견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도 광고의 사실주장은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반론보도에 담기게 될 경쟁업체의 유사광고를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의 책무는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성격의 반론보도를 원하는 경쟁자와의 관계에서도 편집국과 피해자 사이에 원칙적으로 존재하는 보도상의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의 사실주장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는 경쟁자는 스스로 자신의 광고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동일한 영향력 행사

<sup>76)</sup> Fiedler, a.a.O., MStV § 20 Rn 23.

의 기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7)</sup>

#### 4) 의회와 입법기관의 공개회의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의 경우 (제20조 제4항)

의회나 입법기관의 공개회의에 관한 진실에 입각한 보도는 반론보도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전제는 해당 보도가 적절한 인상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공개회의에서 개진된 원래의 진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울러 각각의 주 출판법을 근거로 법원심리에 관한 보도 역시 반론보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유추적용 될 수 있다.<sup>78)</sup>

#### (5) 피해자와 독자의 비용문제(제20조 제1항 제1문)

편집영역에서의 반론보도는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독자들에게도 반론보도의 검색을 위한 어떠한 추가비용이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최초보도가 가령 디지털 잡지판과 같이 유료로 이용가능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내의 유료섹션에서 전파된 경우, 반론보도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동일한 유료의 디지털판 내지 유료섹션 내에 게재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론보도의 접근에 대해서만 추가의 별도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sup>79)</sup>

### 3. 형식적 요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상의 반론보도는 개인이나 기관과 연관

<sup>77)</sup> Fiedler, a.a.O., MStV § 20 Rn 24.

<sup>78)</sup> Fiedler, a.a.O., MStV § 20 Rn 26.

<sup>79)</sup> Fiedler, a.a.O., MStV § 20 Rn 27.

된 모든 사실주장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으며, 그밖에 어떤 또 다른 실질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반론보도는 최초주장이 진실이고 적법한 경우에도 공표될 수 있으며, 심지어 반론보도 자체가 허위인 경우에조차 공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반론보도 행사범위의 사실상의 확장을 조정하기 위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는 엄격하고 필수적인 형식적 조건에 구속되며, 제공자는 형식적 요건의 위반 시에 반론보도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sup>80)</sup>

### (1) 반론보도의 문서형식과 서명(제20조 제2항 제4호)

반론보도는 문서형식으로 송달되어야 하고 피해자나 그의 법적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여기에 임의대리인은 가능하지 않다.<sup>81)</sup>

그에 반해 반론보도 게재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데 그치는 절차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리고 임의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민법 제174조 제1문을 고려할 때 대리인은 자신의 대리권 수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sup>82)</sup>

### (2) 반론보도의 지체 없는 송달

텔레미디어에 있어서도 반론보도문은 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되어야 하며, 지면신문과 동일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고려될 수 있다.<sup>83)</sup>

반론보도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그리고 과실로 인한 지연 없이 송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변적인 기간은 두 개의 제척기간을 통해 보완된다. 즉, 송달은 마지막 제공일로부터 6주 이내에 그리고 문제된 기사

<sup>80)</sup> Fiedler, a.a.O., MStV § 20 Rn 29.

<sup>81)</sup> Fiedler, a.a.O., MStV § 20 Rn 30.

<sup>82)</sup> Fiedler, a.a.O., MStV § 20 Rn 31.

<sup>83)</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5.

의 최초제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나 법적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 구속되지 않는다.<sup>84)</sup>

한편, 이러한 제20조상의 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비판견해가 존재한다. 즉 제20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늦어도 대상 사실주장의 최초입력 3개월 이내에 반론보도청구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반론보도청구권이 탈락하게 되는데, 문제는 최초 입력된 사실주장이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보도청구권이 탈락한다는 사실이다. 이 규정의 입법이 유서에 따르면 주 출판법 규정을 따랐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이는 수궁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주 출판법의 제척기간은 대상 사실주장의 공표일을 기산점을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신문 등 출판물의 경우에는 공표 이후 3개월을 초과하면 반론보도청구권은 배제된다. 다만 그 사이에 신문이 대상 표현을 재차 반복한다면 새로운 공표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새로운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텔레미디어의 콘텐츠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제공되는 경우, 즉 항상 새롭게 공표되는 경우에 이러한 텔레미디어 내의 지속적 제공은 지면매체의 새로운 발행 때마다 사실주장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미처 간과하지 못한 해당조항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sup>85)</sup>

### (3) 표현법상 “전부 혹은 전무 원칙(Alles-oder nichts-Prinzip)”

피해자의 반론보도문은 개별적인 사항들이 축약되지 않은 상태로 원문 그대로 게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에 의해 부당하게 축약된 경우, 그러한 반론보도문의 게재는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발행인 또는 기타 제공자는 반론보도를 수정할 어떠한 의무나 권한도

<sup>84)</sup> Fiedler, a.a.O., MStV § 20 Rn 32.

<sup>85)</sup> Wenzel, a.a.O., § 11, Rz 355.

가지지 못한다.<sup>86)</sup>

#### 4. 반론보도게재의 이행요건

텔레미디어의 매체특성으로 인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는 신문이나 방송과는 상이한 반론보도 게재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미디어의 반론보도 게재문제는 무기평등의 원칙에서 텔레미디어의 특수성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sup>87)</sup>

##### (1) 지체 없이(제20조 제1항 제1문)

반론보도청구가 모든 내용상 그리고 형식상 요청들을 충족한 경우, 제공자는 지체 없이 동시에 과실에 의한 지연 없이 자신의 제공물 내에 반론보도를 게재해야 한다. 제공자에게 게재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에는 법적 조력자의 자문 하에 반론보도에 대한 법적 그리고 사실적 심사가 가능한 기간이 포함될 수 있다. 일간 혹은 주간단위로 공표되고 전파되는 디지털 신문이나 디지털 잡지의 경우 “제공 내에서의 지체 없는 게재”란 원칙적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는 다음 판에서의 공표로 이해될 수 있다.<sup>88)</sup>

##### (2) 무기평등의 원칙(제20조 제1항 제2문-제4문)

###### 1) 반론보도 게재방법

반론보도는 첨가 또는 생략 없이 제공 내에 게재되어야 한다(제1항

---

<sup>86)</sup> Fiedler, a.a.O., MStV § 20 Rn 33.

<sup>87)</sup> Fiedler, a.a.O., MStV § 20 Rn 34.

<sup>88)</sup> Fiedler, a.a.O., MStV § 20 Rn 35.

제2문). 반론보도는 가능한 한 최초보도의 독자층에 도달해야 하며, 따라서 제공되었던 동일한 부분에서 그리고 동일한 활자크기로 공표되어야 한다.

반론보도는 최초보도가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제1항 제3문). 다만, 입법자는 이러한 직접연결요청을 단지 웹 제공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사서비스만을 염두에 두었고, 독자들에게 통째로 넘겨져서 해당기사와 나중에 반론보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89)</sup>

어쨌든 직접 연결 요청은 최초보도와 반론보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화면에서 나타날 때 충족된다. 이때 문제된 사실주장과 반론보도가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체 텍스트나 기사내용 혹은 전체 제공과 반론보도가 연결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하나의 화면에서 동시에 보일 수 없는 광범위한 내용의 경우에는 이의 제기된 사실주장과 반론보도 혹은 반론보도 안내가 항상 한 화면에서 동시에 보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sup>90)</sup>

그리고 이러한 직접 연결 요청은 최초표현에 바로 접근이 가능한 반론보도 안내표시가 명백하게 설정되었을 경우에도 충족된 것으로 보며, 여기에는 특히 링크설정 역시 포함된다.<sup>91)</sup> 이러한 링크설정을 통한 연결의 전제조건은 링크설정이 표시된 텍스트에서 반론보도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안내표시가 이용자에게 분명히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sup>92)</sup> 또한 이러한 링크설정을 통한 반론보도의 안내는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반론보도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만약 여러 번의 클릭이나 여러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이는 직접적 연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sup>93)</sup> 아

<sup>89)</sup> Fiedler, a.a.O., MStV § 20 Rn 38.

<sup>90)</sup> Wenzel, a.a.O., § 11, Rz 356.

<sup>91)</sup> LG Afp 2009, 165(166).

<sup>92)</sup>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6.

<sup>93)</sup> Wenzel, a.a.O., § 11, Rz 356.

올리 최초보도가 단지 검색기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면, 검색할 때마다 최초보도와 반론보도의 안내표시가 함께 게재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sup>94)95)</sup>

## 2) 반론보도 게재기간 및 게재위치

텔레미디어라는 매체특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배치기간의 지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텔레미디어 서비스는 통상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sup>96)</sup> 따라서 제20조 제1항은 “반론보도는 최초보도가 지속되는 동안 이와 직접 연결해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97)</sup>

하지만 최초보도가 반론보도 청구시점이나 반론보도 게재 이전에 의무자의 온라인 제공에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경우, 반론보도는 제공내의 최초보도가 게재되었던 유사한 위치에 게재되어야 한다. 대체로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제공하는 텔레미디어의 경우라면 반론보도는 동일한 섹션에 게재되어야 하고, 최초보도와 마찬가지로 쉽고 빠르게 이용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예컨대 홈페이지에서 섹션의 선택과 기사의 선택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반론보도 역시 이와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sup>98)</sup>

다만, 개별 매체 각각의 기술적 한계에서 제약이 생겨날 수 있다. 편집국에 의해서도 수정될 수 없는 고정된 디자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앱 초기화면을 단지 반론보도게재를 위해 프로그래밍 변경까지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무기평등의 원칙이 매체의 기술적

94) LG AfP 2009, 165(166).

95) Fiedler, a.a.O., MStV § 20 Rn 37.

96)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6.

97) Fiedler, a.a.O., MStV § 20 Rn 39.

98) Fiedler, a.a.O., MStV § 20 Rn 39.

프로그래밍 변경까지 요구할 수 있지는 않으며, 이것은 미디어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구성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sup>99)</sup> 이와 함께 프로그래밍 변경의 필요한 시간소모가 종종 반론보도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문제된 언론 제공물이 제3자의 플랫폼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자 자신의 프로그래밍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반론보도는 기술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공표되어야 할 것이다.<sup>100)</sup>

마지막으로 반론보도는 최초보도가 제공되었던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한다.<sup>101)</sup>

### 3) “동일한 형태”로 제공의 의미

반론보도는 문제된 사실주장과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제20조 제1항 제2문). 반론보도가 “동일한 형태로” 공표되어야 한다는 의무는 이전에 단지 자를란트주 출판법에만 존재했었던 것인데, 헌법상의 우려로 인해 현재는 삭제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구성의 정체성과 관련된 의무는 무기평등의 원칙을 통해서도 요구되어서는 안 되며,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sup>102)</sup>

한편, 동일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최초보도가 비디오나 이와 비슷한 시청각적 표현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반론보도 역시 비디오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기적인 출판간행물의 경우에는 사진 등 영상표현에 대해서 반론보도가 원칙적으로는 텍스트를 통해서 행해지고 반드시 불가피한 예외사례에 있어서만 반박사진을 통해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자적 언론 제공물

99) Wenzel, a.a.O., § 11, Rz 357; Lent, a.a.O., ZUM 2016, 954, 960.

100) Lent, a.a.O., ZUM 2016, 954, 960.

101) Fiedler, a.a.O., MStV § 20 Rn 40; Soehring/hoene, a.a.O., § 29 Rn 29.126; Wenzel, a.a.O., § 11, Rz 358.

102) Spindler/Schuster/Mann RStV § 56 Rn 21.

에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전자적 언론 제공자의 편집상의 구성자유 및 비례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박사진을 통한 반론보도의 공표는 피해자 이익의 보호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만 요구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진은 종종 평가적이고 주관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각도 선택, 사진편집, 명암, 피사계심도 등등) 역시 고려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반박사진은 사실에 대한 사실원칙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sup>103)</sup>

나아가 전자적 언론 제공물 내에 삽입된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시청각 요소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는 텍스트를 통해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반박비디오의 공표는 제20조 제2항 제4호에서 필수적인 문서형식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요구될 수 없다. 게다가 비디오의 주관적-평가적 표현방식(영상물의 서사구조, 카메라 동선, 음향, 편집 등등)은 반박사진 보다 한층 더 강한 정도로 사실 대 사실원칙에 반할 것이다.<sup>104)</sup>

이어서 반론보도문의 공표는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자적 언론제공물 내의 게재를 통해 행해지면 된다. 따라서 청구권자에 의해 낭독된 반론보도문을 녹화해서 공표할 의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언론제공자가 반론보도문을 낭독하는 시청각적 녹화물을 제공 내에 게시할 의무 역시 원칙적으로 요구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제공자의 편집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다.<sup>105)</sup>

결국 동일한 형태라는 구성요건에 관해서 입법자는 오히려 반론보도의 주목도가 최초보도에서와 동일하게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여기에서는 반론보도문의 크기, 컬러 등등이 중요할 것이다. 다만, 텔레비전에서 반론보도가 공표되었고 이 텔레비전 영상이 텔레미디어 제공을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을 경우에 텔레미디어의 반론보도의무는 텔레비전에서 낭독된 반론보도의 제공을 통해

103) Lent, a.a.O., ZUM 2016, 954, 959.

104) Lent, a.a.O., ZUM 2016, 954, 959.

105) Lent, a.a.O., ZUM 2016, 954, 959.

서 충족될 수 있다.<sup>106)</sup>

### (3) 반론보도에 대한 편집국의 반박입장 달기 금지(제20조 제1항 제5문)

#### 1) 반론보도에 입장 달기 금지원칙

반론보도에 대한 편집국의 반박은 사실주장으로 제한되며,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제20조 제1항 제5문). 따라서 편집국의 반론보도에 대한 평가적 진술(Redaktionsschwanz), 소위 꼬리 달기는 금지되며,<sup>107)</sup> 직접적 반박뿐만 아니라 링크 걸기, 그밖에 반론보도에 대한 참조사항의 설정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무자의 주해 달기 금지원칙(Glossierungsverbot)은 신문이나 방송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정이다.<sup>108)</sup> 하지만 이와 결부된 기본권 보호영역으로의 개입으로 인해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상의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sup>109)</sup>

반면에 다툼이 된 주제에 관해 편집국 자신의 의견표현이나 평가적 보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평가적 보도가 반론보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상, 이는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밖에 반론보도가 방송된 이후에도 관련 주제들에 관해 계속해서 보도해도 되는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존재한다. 입장 달기 금지원칙은 단지 반론보도에 대한 직접적 입장 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는 반론보도와 의 직접적 관련성만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개념상 어떠한 반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동일한 주제에 관한 또 다른 보도로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또 다른 보도는 텔레미디어 제공자에게 거부되지 않는데, 동일

106) Wenzel, a.a.O., § 11, Rz 359.

107) Fiedler, a.a.O., MStV § 20 Rn 41.

108) Soehring/hoene, a.a.O., Rn 29.127.

109) Wenzel, a.a.O., § 11 Rz 360.

한 사안일지라도 그에 관한 포괄적 반복보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sup>110)</sup>

한편, 제20조에 따른 반론보도는 진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공표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반론보도의 법적 성격에 관한 편집국의 설명은 언제나 허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평균독자들에게 종종 반론보도가 어떤 점에서 잘못된 최초보도를 해명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sup>111)</sup>

## 2)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 금지원칙

편집국의 반박은 반론보도와 직접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제20조 제1항 제5문).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도 입법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논란이 제기된다.<sup>112)</sup> 하지만 반론보도의 법적 성격이 진실 혹은 허위와 무관하게 게재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법적 상황에 대한 지적은 편집국의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편집국 해명은 피해자의 반론문과 직접 연결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sup>113)</sup>

베를린 상급법원(Kammergericht Berlin)은 반론보도에 대한 반박의 직접 연결 금지규정을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출판 및 미디어자유)에 대한 독자적이고 중대한 개입이지만, 그럼에도 정당화된 개입이라고 판시했다.<sup>114)</sup> 즉, 설사 직접 연결 금지가 진실발견 절차의 차단과 연결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감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러한 금지가 출판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기도 한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측의 반론보도가 자신의 최초 보도의 허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동시에 반론보도문의 진실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미디어 측의 반박권은 반론보도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미디어의 상보적 진술로서 이해한다. 따라서 만약 편집

110) Wenzel, a.a.O., § 11 Rz 361.

111) Fiedler, a.a.O., MStV § 20 Rn 43; Wenzel, a.a.O., § 11 Rz 360.

112) Soehring/hoene, a.a.O., Rn 29,127.

113) Fiedler, a.a.O., MStV § 20 Rn 44, 45.

114) KG ZUM-RD 2012, 388.

국이 자신의 표현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는 어떠한 안내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필수적인 의사소통의 자유의 희생 하에 무기평등의 원칙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sup>115)</sup>

결론적으로 편집국은 반론보도와 자신의 반박을 반론보도의 진술이 왜곡되는 방식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직접 연결 금지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합헌적 해석차원에서 적절할 것이다.<sup>116)</sup>

### 5. 법원에의 권리주장(제20조 제3항)

반론보도청구권은 민사소송법 제935조 이하의 가처분선고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관철될 수 있다(제20조 제3항). 이때 긴급성은 소명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안절차는 허용되지 않는다.<sup>117)</sup>

그리고 제20조 제3항 제1문의 “받아들여지지 않은”의 요건이 반드시 법원 소제기 전에 권리주장이 있어야만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식의 필수적 전치절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미디어 측 의무자가 소제기를 위한 계기를 제공하기 전에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미디어 측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나서 이후에 소송비용을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소송제기를 위한 계기란 우선적으로 의무자가 반론보도 게재를 명백히 거부하거나 게재여부에 관한 법적으로 적절한 해명기간을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sup>118)</sup>

한편, 법원이 법적 판단과정에서 반론보도문을 수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 혹은 일부항목의 불허사유로 인해 전체적으로 기각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한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최초보도의 개별

115) Fiedler, a.a.O., MStV § 20 Rn 46.

116) Soehring/hoene, a.a.O., Rn 29,127.

117) Fiedler, a.a.O., MStV § 20 Rn 48.

118) Fiedler, a.a.O., MStV § 20 Rn 48.

진술들을 반론보도가 가능하지 않은 의견표현으로 간주하거나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의견표현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제한된 사유에서만 이를 사실주장의 요건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sup>119)</sup>

## IV.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상의 간기의무

### 1. 개관

텔레미디어에 대해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간기의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반론보도청구서가 송달되어야 할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반론보도청구권은 실무상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아무튼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은 온라인 언론 제공물에 대한 특별한 간기의무(Impressumpflichten)을 규정한다. 이러한 저널리즘상의 간기의무는 누가 게재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알려주는 식별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sup>120)</sup>

인쇄매체에 대한 간기의무는 주 출판법이 규율하고(예컨대, 노스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8조),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주 미디어법(예컨대, 노스트베스트팔렌주 미디어법 제31조)이 규율한다. 이에 더해 일부에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간기규정들도 존재한다(라인란트 팔츠 주 미디어법 제9조). 이와 달리 온라인 언론 제공물에 대해서는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이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에 대해 간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121)</sup> 이것은 소위 확대된 표시의무로

119) Fiedler, a.a.O., MStV §20 Rn 49.

120) Lent, a.a.O., ZUM 2015, 134.

121) 제18조 정보의무와 정보권

① 전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적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 텔레미디어 제공자는 다

서 다른 텔레미디어에 대한 표시의무를 넘어서서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제18조 제2항의 간기의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며, 미디어 공표와 상충하는 상대방의 법익보호에 기여하는 일종의 규제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법 제5조 제2항이 말하는 일반법에 해당하고,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기본권 보호를 제한하게 된다.<sup>122)</sup>

제18조 제2항은 특히 텔레미디어 이용자의 권리보호, 특히 인격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확대된 표시의무는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공공의 의사소통절차 및 여론형성절차의 개방성에 기여하고 이용자에게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최소한의 투명성과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간기의무는 헌법상의 실제적 조화의 원칙관점에서 제공자 이익, 이용자 이익 그리고 공공질서 이익의 조정이 보장되도록 마련되어야 한다.<sup>123)</sup>

한편,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의 지명의무의 핵심은 다른 많은 텔레미디어 제공자에게도 적용되는 텔레미디어법 제5조, 제6조상의 정보

음의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

1. 이름과 주소 및
  2. 법인의 경우에도 승인된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
- ②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 특히 텍스트나 영상의 정기간행물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재현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의 제공자는 텔레미디어법 제5와 제6조에 따른 정보에 추가해서 이름과 주소정보가 포함된 책임자를 지명해야 한다. 여러 책임자가 지명된 경우, 각각의 지명자가 서비스의 어떤 부분을 책임지는지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1. 내국에 지속적 체류하는 사람
  2. 공직을 차지할 자격을 법원판결을 통해 상실하지 않는 사람
  3. 사업활동에 제약이 없는 사람
  4. 형사소추 가능성에 제약이 없는 사람만이
- 책임자로서 지명될 수 있다.
- 제3문 제3호와 제4호는 청소년을 위해 결정된 텔레미디어를 책임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2) Lent, a.a.O., ZUM 2015, 134.

123) Lent, a.a.O., ZUM 2015, 134.

제공의무와는 다른 온라인 언론 제공물에서의 특별한 간기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 있다.<sup>124)</sup>

## 2.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sup>125)</sup>에 적용된다. 여러 제공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제공물마다 독자적인 간기의무가 존재한다. 이때 여러 제공물이란 대상그룹이 볼 때 제공목적에 따라 각각 그 자체로 독립된 제공물일 경우를 말하며, 전체적인 종합적 평가에 비추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제공으로 보일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sup>126)</sup>

## 3.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 제1문은 텔레미디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제공자의 정보의무 참조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전자적 언론 제공물은 규범목적이나 모든 형태의 온라인 저널리즘에 존재하는 투명성 요청에 비추어 그것이 텔레미디어법 제5조의 전제 조건인 상업성과 유료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텔레미디어법 제5조 제1호-제7호의 요청정보들을 어쨌든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정기구독이나 광고를 통해 유지되는 전문적인 전자적 언론 출판물 외에 광고지원 없는 일반인 언론 제공물도 정보의무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령 저널리즘적 블로그나 마이크로 블로그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sup>127)</sup>

<sup>124)</sup> Lent, a.a.O., ZUM 2015, 140.

<sup>125)</sup>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의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Telemedien mit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n Angeboten)의 개념에 관해서는 앞의 제20조 관련 부분 참조.

<sup>126)</sup> Lent, a.a.O., ZUM 2015, 134.

<sup>127)</sup> Lent, a.a.O., ZUM 2015, 135.

## 4. 책임자의 지명

### (1) 책임자의 개념

미디어국가협약(MStV) 및 이의 전신에 해당하는 방송국가협약(RStV)의 입법이유서는 책임자의 개념을 정의한 바가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정기적인 출판언론의 간기의무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 출판법의 책임편집자 범리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의 의미상 책임자는 제공자가 제공물 가운데 형사처벌이 가능한 내용의 배제에 관한 결정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자연인을 말한다. 이때 제공자와 책임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자는 형사처벌 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신문기사나 저널리즘성격의 블로그의 공표를 저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그러한 공표가 설사 제공자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추후의 기사삭제가 아닌 처음부터 공표를 차단할 권한을 전제로 한다.<sup>128)</sup>

다만, 형식적인 지명만으로는 아직 제18조 제2항의 책임자의 지위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소위 정기적 출판언론의 명목상 편집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지 자신의 이름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쉽게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내용에 관한 일체의 처분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자 지명은 단지 처분권한이 존재한다는 반박 가능한 간접증거에 불과할 것이다.<sup>129)</sup>

### (2) 책임자 지명의 구성요소; 이름 및 주소정보

책임자 지명은 텔레미디어 내에서 이용자를 위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직접 접근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도로 책임자의

<sup>128)</sup> Lent, a.a.O., ZUM 2015, 136.

<sup>129)</sup> Lent, a.a.O., ZUM 2015, 136.

이름과 주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아가 간기정보의 명료성원칙에 따라 지명을 분명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라는 표현으로 인해 지명표현방식을 반드시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참조 하에 “미디어국가협약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라고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sup>130)</sup>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에 대한 언급과 책임자가 누구라는 표현 없이도 제공물의 전체내용에 대해서 혹은 제공물의 특정부분에 대해서 저널리즘상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분명하게 밝히는 객관적 형식(예컨대, ~에 대해 책임이 있다)만으로도 명료성원칙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한 저널리즘 역할에 대한 추가정보, 즉 “책임편집자”, “책임편집국”이라는 표현 역시 가능하다. 그리고 정기적 출판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자, “V.i.S.d.P.”<sup>131)</sup>라는 표시 역시 투명성원칙에 부합한다.<sup>132)</sup>

이름정보는 성 이외에 이름 역시 축약되지 않고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종 성만으로는 혼란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예명으로 알려져 있다면, 이러한 가명 역시 허용된다. 한편, 주소와 관련해서는 우편번호, 지역, 번지수가 포함된 유효한 주소정보가 필수적이다. 회사의 정보, 즉 텔레미디어 제공자의 주소 역시 충분하다. 이에 반해 사서함정보나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 주소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책임자가 동시에 제공자라면, “제공자 겸 책임자”라는 결합정보를 통해 이름과 주소를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sup>133)</sup>

### (3) 인적 범위

미디어국가협약(MStV)이나 구 방송국가협약(RStV)의 입법이유서에서

<sup>130)</sup> Lent,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MStV § 18, Rn 10.1.

<sup>131)</sup> 출판법에 따른 책임자의 약자.

<sup>132)</sup> Lent, a.a.O., ZUM 2015, 136.

<sup>133)</sup> Lent, a.a.O., ZUM 2015, 137.

는 누가 제18조 제2항에 따라 책임자로서 지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확정 역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블로그나 마이크로 블로그와 같은 시민저널리즘에서는 제공자(블로거)와 책임자가 동일인일수도 있을 것이고, 제공자 외에 제공자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책임자로 지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디지털 출판언론 제공물의 경우 통상적인 책임자는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의 편집자일 것이다.<sup>134)</sup>

그밖에 간기 내에는 책임자 외에 추가적인 인물이 지명될 수도 있는데, 가령 디지털신문의 편집장 혹은 담당 편집자나 온라인 포털의 일부 섹션에 속한 포털사의 직원이 거명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인물의 지명은 이 사람 역시 제18조 제2항에 따른 책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표시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실제의 책임구조에 근거해서 개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간기에 편집국, 팀, 연락담당자 등 여러 직원들이 지명된 경우라도 이 사람들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은 마찬가지이다.<sup>135)</sup>

#### (4) 법적 효과

책임자의 지명에 따른 간기의무는 결과적으로 누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제공물의 내용에 대해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확정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책임자로 지명된 사람만이 모든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미디어국가협약(MStV)상의 이러한 책임과 제재시스템은 주 출판법(예컨대, 노트라인베스트팔렌주 출판법 제21조 이하)과는 달리 책임자에 대한 법적 의무나 제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기적 출판언론과는 다른 상이한 구조를 가진다.<sup>136)</sup>

<sup>134)</sup> Lent, a.a.O., ZUM 2015, 137.

<sup>135)</sup> Lent, a.a.O., ZUM 2015, 137.

<sup>136)</sup> Lent, a.a.O., ZUM 2015, 138.

따라서 미디어국가협약(MStV)상의 책임자 규정은 엄격한 책임추궁기능이 아니라 완화된 호소기능의 의미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8조 제2항에서 요구된 개인 책임자의 지명은 전자적 언론 제공물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책임자 지명은 저널리즘적 기준들의 준수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을 통해 보호되는 미디어의 여론형성절차에서 저널리즘 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이용자의 이익이 확보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sup>137)</sup>

## V.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 맞는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확대를 위한 제언의 일환으로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 상의 반론보도 청구권 및 제18조 상의 간기의무 규정들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독일 멀티미디어 관련 법제들은 이미 오래 전에 텔레미디어의 내용상 규제를 위해서 신문, 방송 혹은 인터넷 미디어 등 기존의 수직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라는 독창적 개념을 창안함으로써 저널리즘 성격을 지닌 다양한 융합매체에 대해서도 저널리즘 원칙과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발전되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20조의 반론보도 청구대상은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라는 개념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표지의 판단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저널리즘 기준으로서 보편성(내용상 다양성), 시사성(새로운 정보의 기사), 정기성(정기적 혹은 계속적 업데이트), 공개성(일반적 접근

<sup>137)</sup> Lent, a.a.O., ZUM 2015, 140.

가능성) 요소가 상황에 맞게 변형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sup>138)</sup> 아울러 이러한 형식적 기준들 외에도 제공물의 저널리즘 지향성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적용대상 멀티미디어 역시 출판 등 미디어 자유권의 보장이라는 맥락 하에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미디어 보도를 통해 여론형성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공자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며<sup>139)</sup> 이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달리 판단될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와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현행 미디어 법체계 나아가 이를 둘러싼 개선논의들이 여전히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융합현상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언론중재법은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인터넷신문”을 피해구제대상으로 편입시킨 이후 2009년 인터넷포털과 언론사닷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IPTV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동 법의 적용대상에 추가하게 되었다.<sup>140)</sup>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은 ‘언론’이라는 개념 하에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한정된 뒤,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포털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언론중재법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sup>141)</sup>

그 후 별다른 개정 움직임이 없다가 언론중재위원회가 2015년 10월 13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소위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이라는 새로운 모습의 미디어 형태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sup>142)</sup>

138) Lent, a.a.O., ZUM 2013, 914(915).

139) Lent, a.a.O., MStV § 17 Rn 14.

140) 이승선, 위의 논문, 36면.

141) 박아란, 위의 논문, 59면.

하지만 이러한 입법과정과 논의의 전체적 흐름은 무엇보다 매체중심의 규정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특히 “간행물”이라는 출판형식의 매체중심 사고를 탈피하지 못한 점에서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미디어법제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디어와 관련된 법은 이제 매체형태에 초점을 맞춘 규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굳이 새로운 미디어가 방송이나 신문이나를 따지기 보다는 그 미디어가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는 주장은 눈여겨 볼 사항이다.<sup>143)</sup> 이에 따르면 언론 개념은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맞춘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뉴미디어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탈 매체중심적 시각의 전환을 통해 뉴미디어를 신문이나 방송의 범주에 넣기 보다는 뉴미디어가 생산하거나 유통한 콘텐츠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본다. 이러한 견해는 현실진단에 있어 핵심을 간파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 관점 하에서 과연 현행 언론중재법이 헌법상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우리가 무엇보다 주시해야 할 오늘날의 온라인 언론 제공물의 특징은 그 구성방식이나 제공형태에 있어서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전통적 매체에서 벗어나 텍스트, 영상, 동영상 혹은 이들의 혼합 형태를 지닌 미디어 융합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체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은 더 이상 기존의 매체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제공 콘텐츠가 저널리즘 활동을 통해 헌법상의 여론형성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전

142) 2015년 10월 13일자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 -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설” 자료집에 따르면, 제7조 제1항 신설규정 부분에서 “중재위원회는 이 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기타 방식에 의해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의해 피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143) 박아란, 위의 논문, 73면.

개하고 있는지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만 피해구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빈틈없는 언론중재제도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며, 나아가 헌법상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 보장이라는 기본가치가 투영된 합헌적 입법체계의 마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도 이제는 매체규정 방식을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 유사미디어 간행물 등 열거방식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해 포괄적·개방적 멀티미디어 개념정립으로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상세히 살펴본 독일 텔레미디어 개념의 참조 하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저널리즘적 멀티미디어 제공물에 상당하는 독자개념을 창설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이 도입한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친 제공물이 포함된 텔레미디어” 개념 역시 하나의 법 정책적 구상에 따른 복합적 개념의 창조물로서 대체로 편집작업을 거쳐 제작된 저널리즘적 성격의 콘텐츠가 담긴 멀티미디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제공형태가 텍스트 인자, 시청각 요소인지, 동영상 형태인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예상 밖의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도 포섭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포괄적·개방적 개념이라면 앞서 서론에서 제시되었던 가세연을 포함해 국내의 각종 시사 유튜브 채널들에 대한 포섭문제 역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저널리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되었다는 학계의 지적<sup>144)</sup>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이 소개에 주력하였던 독일 미디어국가협약(MStV)의 텔레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요건에 관한 부분들은 지금까

<sup>144)</sup>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50693.html>, 한겨레 2022년 7월 22일자 “한선의 미디어전망대, 시사 유튜브 채널도 ‘언론’…합당한 법적 책임 감당해야” 제하의 기사

지 다뤘던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포섭문제와는 별도로 현재의 언론중재법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의 반론보도 실무기준들에 있어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무기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제20조 제1항 제3문이 규정하고 있는 직접 연결 요청조항이나 동일한 형태의 제공 요건들은 현재 언론중재법의 대상인 인터넷신문이나 언론사가 제공하는 동영상 형태의 제공물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 사건에서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측에서 동영상이나 비디오 스트리밍 형식의 반론보도를 요구할 경우 이는 사실 대 사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멀티미디어의 매체 특성에 따라 반론보도 청구시점에 제공자의 온라인 제공물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보도의 제공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최초보도와 유사한 위치나 동일한 섹션에서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어야 한다는 제20조 제1항 제4문의 규정 역시 반론보도 이행의 실무에 있어서 유용한 기준으로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의 실효적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 매체의 간기의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멀티미디어 제공자 측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실무적으로 피해자는 반론보도청구서 자체의 송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신속한 피해구제 역시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디어국가협약(MStV)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저널리즘적-편집을 거쳐 제작된 텔레미디어 제공물의 특별한 간기의무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제도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에 해당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김주연 (2020).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언론중재제도 관련 입법과제 검토, <언론중재>, 제155호, 34-51.
- 권은정 (2019). 개인방송 규제에 관한 법체계적 고찰-‘통합방송법안’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규제입법 논의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47집 제4호, 299-333.
- 김여라 (2018).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법」 편입 관련 법제 동향 및 주요 쟁점, <KISO JOURNAL>, 제33권, 16-21.
- 김태오 (2020). 독일의 미디어협약 제정안상 주요 내용-구 방송협약을 대체·보완하는 새로운 규제를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2020. 2호, 75-87.
- 류정호 (2015).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호, 35-62.
- 박신욱 (201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플랫폼에 게시된 동영상으로 인한 법적 쟁점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판례 연구, <법학논총>, 제36집 제3호, 249-284.
- 박아란 (2015). 뉴미디어 시대 언론 개념의 특성 및 한계, <언론과 법>, 제14권 제3호, 49-70.
- 박용상 (1991). 판례를 통해 본 정정보도청구권의 실제, <언론중재>, 통권 제38호, 21-40.
- 손형섭 (2021).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비판과 개선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179-205.
- 오기두 (2016). 인터넷개인방송에 의한 표현의 보호와 규제, <미디어와 인격권>, 제2권 제1호, 35-62.
- 이승선 (2021). 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1-65.
- 이유진 (2020). 새 ‘미디어법’에서 빠져나갈 플랫폼은 없다, <신문과 방송>, 제590호, 150-154.
- 이현정 (2022).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제8권 제1호, 93-136.
- 장성준 (2015). 독일의 미디어주간협약(MStV) 도입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

〈KCA Media Issue & Trend〉, 2015. 5, 62-77.

조소영 (2006). 반론보도청구권의 헌법적 의미와 그에 대한 헌법적 평가, 〈공법학연구〉, 제7권 제4호, 153-181.

Eva Lohse, Weber kompakt, Rechtswörterbuch 9. Edition 2023.

Fechner, Medienrecht 21. Aufl, 2021.

Fiedler,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Lent, “Aktuelle Rechtsfragen der Gegendarstellung in elektronischen Presseangeboten”, ZUM 2016, 954-960.

\_\_\_\_\_, “Besondere Impressumspflichten im Online-Journalismus”, ZUM 2015, 134-140.

\_\_\_\_\_, “Elektronische Presse zwischen E-Zines, Blogs und Wikis” ZUM 2013, 914-920.

\_\_\_\_\_, BeckOK Informations- und Medienrecht, Gersdorf/Paal 41. Edition, 2023.

Sajuntz/Wiggenhor, Hasselblatt, MAH Gewerblicher Rechtsschutz 6. Aufl, 2022.

Soehring/hoene, Presserecht 6. Aufl, 2019.

Wenzel, Das Recht der Wort- und Bild- Berichterstattung, 6. Aufl, 2018.

## ■ ABSTRACT

---

# The reply-reporting system under the German Media State Agreement (MStV)

Lee Soo Jong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Executive Adviser/Ph.D.

Whether reply-reporting is possible for new multimedia content such as YouTube channels provided through video sharing platforms can be considered an important topic under media law. This is because, while a wide variety of multimedia has already emerged in Korea due to the convergence of media, appropriate regulation or damage relief for this is still distant due to the lack of relevant laws.

Contrarily, in the case of Germany, multimedia legislation has long been reorganized with a focus on similar functions as part of the introduction of a horizontal regulatory model. In addition, the German Media State Agreement (MStV), which came into force in September 2020, imposes various journalistic obligations on journalistic and editorial telemedia (*journalistisch-redaktionell gestaltete Telemedien*), including the right to reply, in response to the rapidly changing convergence of digital media.

In comparison, we must point out that the current media legal system, including the Press Arbitration Law, and the related improvement discussions are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he phenomenon of media convergence in the new multimedia era, as they still adhere to a media-centric regulatory method.

Therefore, in discussing the expansion of the domestic reply-reporting request system for multimedia, it is now the time when a paradigm shift is urgently needed to break away from the media-centric regulation method and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open multimedia concept. This is because today's online media offerings are characterized by a departure from traditional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broadcasting, in their composition and delivery format, showing a media convergence in the form of text, video, or a mixture of these. Therefore, an important point in reorganizing the regulatory system is that rather than adhering to the existing media form, it should focus on whether the provided content actively participates in forming public opinion under the Constitution through journalistic activities.

Specifically, creating an independent concept equivalent to journalistic multimedia offerings in accordance with our reality, with reference to the German telemedia concept will be the only answer to cope with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Keywords: Multimedia, journalistic-edited telemedia, German media national convention, right to request-reply reporting, colophon obligation

[ 논문투고일 2024. 6. 21.    논문수정일 2024. 7. 24.    게재확정일 2024. 7. 29. ]

## 미디어와 인격권 관련 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6. 10. 10.  
개정 2017. 2. 3.  
개정 2017. 8. 23.  
개정 2018. 8. 17.  
개정 2020. 9. 1.  
개정 2022. 4. 7.  
개정 2022. 5. 4.  
개정 2022. 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에 따라 구성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논문심사위원의 위촉
3.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
4. 그 밖에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나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의 요구가 있는 때에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를 정하여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의 소집과 관련된 실무는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발간 주무부서가 담당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실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대체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한 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편집위원의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가 심의 대상이 되거나, 편집위원이 논문의 저자·저자의 소속기관·심사위원과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논문의 작성·심사 및 발간 과정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의 구분)** ①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논문: 논문의 저자가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한 해당호의 특집 주제에 응모한다고 명시한 논문

나. 연구논문: 편집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해당호의 특집 주제와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 인격권, 언론윤리, 미디어법제 등의 일반에 관한 논문 및 언론법제 관련 판례 평석 등

다. 특별논문: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타 학술대회 및 위원회 주관 학술행사 등에서 발표된 주제논문 중 저자가 게재를 희망하고 편집위원회가 게재의 필요성을 인정한 논문

- ② 기획논문에 응모하는 저자는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별지 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의 청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제안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기획논문의 경우, 주제 적합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논문의 주제를 미리 정하여 청탁할 수 있다.
- ④ (삭제)
- ⑤ 연구논문 및 특별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 투고신청서(별지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 투고 기준)** ① 논문의 투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언론학 및 법학 관련 학회 회원
  - 2. 관련분야 전문가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관련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등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격 확인을 위해 투고하는 저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려한다.
- 1.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투고하여 심사 중에 있는 논문
  - 2. 기획논문과 연구논문에 이중 공모한 저자(공동저자 포함)의 논문
  - 3. 학문적 수준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논문
  - 4. 동일 저자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에 발표된 논문. 단, 논문의 저자는 선행 출판물과 투고 논문의 상이성에 대해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으며, 논문의 상이성 여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 ④ 연구기관 발간분석보고서 및 연구용역보고서 등을 논문 형식으로 수정·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을 거쳐 심사를 진행하되, 원문의 출처를 밝히고 게재할 수 있다.
- ⑤ 편집위원의 이름으로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은 편집위원회가 관리하여 심사의 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논문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 ③ 논문의 주제가 학자가 평가하기 힘든 실무적인 분야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분야의 실무가 중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투고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 ⑤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교체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특정 심사위원에게 심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동일한 투고자에게 중복된 심사위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⑦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 사유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9조(심사절차)** ① 투고된 논문은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등을 밝히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해당호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은 해당호에 투고된 다른 논문의 심사를 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예규 제7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제10조(심사평가)** 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은 5단계로 구분하되, 점수를 병기한다.

1. 현행 게재(A): 85점 이상
2. 부분 수정 후 게재(B): 75점 이상 85점 미만
3. 대폭 수정 후 당호 재심사(C): 65점 이상 75점 미만

- 4. 대폭 수정 후 차기호 재심사(D): 55점 이상 65점 미만
- 5. 게재 불가(E): 55점 미만
- ②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심사결과와 통보 및 이의제기)** ① 위원회는 논문의 저자에게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별지 3)를 첨부한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 ② 논문의 저자는 심사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저자는 의견 또는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③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맡길 수 있다.

**제12조(논문의 수정)** ①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호 및 제4호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차기호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논문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저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수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별지에 기록하여 수정된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별로 ‘수정’ 또는 ‘수정불가’의 이유를 밝힐 수 있다.
- 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수정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정된 논문이 다시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가 자체 심사를 하거나,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재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정된 기획논문이 차기호에 제출된 경우, 해당 기획

논문이 차기호 기획주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연구논문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3조(게재 논문의 확정)** ① 게재 논문은 발간 기한에 맞춰 심사 및 수정절차를 완료한 논문 중 심사위원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원고료는 편집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게재를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지급하며,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게재 확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편집위원 및 각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6년 10월 10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8월 23일)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의결: 2018년 8월 1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0년 8월 12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4월 7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5월 4일)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6월 21일)

[별지 1]

**<미디어와 인격권>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접 수 번 호		*위원회 기재
제안대상 주제		
성 명	국 문	
	영 문	
소속 및 직위		최종학위
주 소	직 장	(우편번호: )
	자 택	(우편번호: )
연락처	근 무 처	
	휴대전화	
	전자메일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권 제○호  
 기획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를 제안합니다.

제안일자        년        월        일

제 안 자 \_\_\_\_\_ ( 인 )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 기획논문 연구제안서

### 1. 논문제목

가. 국문:

나. 영문:

### 2. 연구개요

### 3. 연구방법론

### 4. 연구내용

### 5. 관련 연구실적 목록

※ 응모 주제와 관련된 응모자의 연구실적 목록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6. 기 타



[별지 3]

##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심사 결과 통지서

투 고 자		투고일	
논문제목			
심사결과			

### 1. 심사결과

※ 세부 심사의견은 별첨 '심사위원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유의사항

### 3. 이의제기 방법

<별첨>

## [심사위원 의견서]

심사평	
심사위원 ①	
심사위원 ②	
심사위원 ③	



- 주 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
- Tel / Fax: (02) 397-3042 / (02) 397-3049
- E-Mail: [journal@pac.or.kr](mailto:journal@pac.or.kr)
- Homepage: [www.pac.or.kr](http://www.pac.or.kr)

##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5. 4. 17.

개정 2017. 2. 3.

개정 2018. 8. 17.

개정 2019. 11. 29.

개정 2021. 12. 2.

개정 2022. 11.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발간에 관한 예규(이하 “학술지 예규”)에 따라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공정한 검증과 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제출한 사람(이하 ‘연구자’라 한다) 및 해당 저작물의 심사·게재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연구자의 연구윤리)**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의하는 위조, 변조, 또는 표절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 또는 누락하여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한다.)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투고, 게재 또는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학술자료 및 연구성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확인서(별지 1)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연구자는 본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별지 2)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해 이해상충이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① 학술지 예규 제5조에 따라 위촉된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위원(이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에 상관없이 학술지 예규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학술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원고작성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편집위원회가 정한 심사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연구윤리 위반행위”란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3조 제2항의 위조, 변조, 표절 행위 및 제3조 제3항의 행위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사람(특히 연구자와의 특수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 저자표시 행위
3.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연구와 관련하여 사회과학 분야 등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둔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1인의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대상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의 연구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심의)** ① 위원장은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과 관련,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된 연구자 및 피검증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지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해 연구자 및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심의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⑧ 제보자 또는 피검증자 등은 연구윤리위원회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연구윤리위원회는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때에는 논문의 게재를 즉시 중단한다.

- ②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된 논문이 이미 게재된 경우에는 다음회에 발간하는 학술지에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게재 취소사실을 공시한다.
- ③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한 연구자는 향후 10년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거나 발표를 할 수 없다.
- ④ 위원회가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결정한 경우 위원회는 학술지 예규 제10조에 따라 지급한 원고료를 전액 환수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와 함께 연구윤리 위반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위원회는 심의 과정의 모든 기록을 심의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심의결과 보고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 증인, 참고인 등 심의과정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저자 소속과 직위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의결: 2015년 4월 17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7년 2월 3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1조는 2015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의결: 2018년 8월 17일)

####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19년 11월 29일)

####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1년 12월 2일)

####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의결: 2022년 11월 25일)

[별지 1]

##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인서

논문제목

본인은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1.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심사를 거쳐 게재된 적이 없는 저자 본인의 지적 창작물입합니다.
2. 본 논문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출판물을 표절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성되었음을 보증합니다.
3. 본 논문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저자	성명	소속 및 직함	연락처	서명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귀중



##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논문작성규정

제정일 2015. 4. 17.

개정일 2016. 3. 25.

개정일 2018. 8. 17.

개정일 2022. 5. 4.

### 1. 논문 작성 일반규칙

- 가.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모든 논문의 작성은 워드프로세스 ‘훈글’로 작성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s://pac.jams.or.kr>)으로 제출한다.
- 나.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논문 편집은 A4 사이즈로 위아래 여백 각 35mm(머리말·꼬리말 0mm), 좌우여백 각 30mm, 글자체는 신명조, 크기 11pt, 장평 95, 자간 -11, 줄 간격은 160%로 한다.
- 라. 본문의 각 문단은 한 자 들여쓰기, 참고문헌은 세 자 내어쓰기를 하고 양쪽 정렬을 한다. 단, 블록 인용, 표와 그림의 제목, 각주는 들여쓰기를 하지 않는다.
- 마. 논문은 국문 초록(제목, 저자명과 소속 및 직위, 국문 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한다. 부록의 첨부가 필요할 경우 부록의 위치는 참고 문헌과 영문 초록 사이로 한다.
- 바. 국문 초록은 논문 내용을 600~1200자로 요약하여 서술하고, 영문 초록은 300~500단어로 작성한다. ‘핵심어(영문 초록은 Keywords)’는 독자가 논문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용어 3~5개를 선정하여 초록 한 줄 아래 나열한다.
- 사. 지원받은 기금의 출처, 학위 논문 등과의 관련성, 저자의 이메일,

교신저자 등의 표기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요소에 별표(\*)를 사용하여 각주 형태로 기술한다.

아. 본문의 소제목들은 수준별로 1. 1. 가. (1). (가). 1). 가). ①. ㉠ 순서로 사용한다.

## 2. 각주의 작성

가. 각주 및 참고문헌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있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PA)의 「출판지침」(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sup>th</sup> ed.)에 준하여 작성한다.

나. 문헌의 인용: 단순한 자료의 출처는 각주로 작성하지 않고, 본문 내의 인용으로 표기한다.

### (1) 본문 중 저자의 인용

- 국내문헌: 성과이름(출판연도)
- 동양문헌: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과이름(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성(원어, 출판연도) 또는 성(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예 김수철(2014)은 ...라고 지적했다.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2013)는 ...을 주장하였다.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라고 정의했다.

### (2) 저자명이 본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

- 국내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출판연도)
- 동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과이름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서양문헌: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 또는

문장의 끝에 (성 원어, 출판연도/번역연도)

- 예) …을 지적한다(김수철, 2014).
- …을 주장하였다(内藤正中, 2013).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2012).

(3) 재인용

원전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우선 표기하고, 쌍점(:) 뒤에 재인용한 자료의 저자명과 출판연도를 표기

- 예) 김수철(2014: 박희수, 2012 재인용)은 … 라고 지적했다.
- …라고 정의한다(McLuhan, 1981: 이희승, 2012 재인용).

(4) 직접 인용

- 단문의 인용: 인용문은 따옴표(“ ”)로 표시하고, 인용문 끝에 쪽수를 괄호로 쓴다. 번역서는 번역서 쪽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 예) 김수철(2014)은 “미디어 플랫폼에 따른 콘텐츠의 변형이 중요하다”(12쪽)고 주장했다.
- 맥루언(McLuhan, 1981/2012)은 “미디어는 … ”(132쪽)라고 주장했다.

- 장문의 인용: 별도의 블록을 만들어 따옴표 없이 제시하고, 블록 전체를 내어쓰기 한다. 블록의 끝에 저자명, 출판연도, 쪽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예) 분석대상판결의 매체별 건수 221건을 대상으로 매체유형에 따른 재판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월간지와 주간신문을 대상으로 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각각 75.0%, 66.7%로 높게 나타났고, 일간신문 40.0%, 인터넷매체 38.3%, 방송 36.6% 순으로 나타났다(한수도, 2014, 123쪽).

### (5) 여러 저자의 단일 연구 인용

○ 저자 두 명이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본문 중 저자의 인용: 두 저자명을 ‘와(과)’로 연결하여 기재
- 저자명이 본문 중 나오지 않는 경우: 한국과 동양 저자명은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고, 서양 저자명은 ‘&’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김수철과 박희수(2014)는 …라고 지적했다.

맥루언과 풀리처(McLuhan & Pulitzer, 1911)는 …라고 주장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 2014).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 Pulitzer, 1995).

○ 세 명 이상의 저자가 함께 수행한 연구의 경우

- 저자가 세 명 이상 여섯 명 미만인 경우: 처음 인용할 때만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첫 번째 저자명과 ‘등’(또는 ‘외’)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두 번째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성과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저자가 여섯 명 이상인 경우 : 처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명 다음에 ‘등’(또는 ‘외’)이나 ‘et al.’을 표기한다.

예 김수철, 박희수, 그리고 최수연(2014)은 …라고 지적했다. 김수철 등은 후속 연구에서 … 주목했다.

…이라고 볼 수 있다(김수철·박희수·최수연, 2014). …라고 한다(김수철 등, 2014).

맥루언, 풀리처, 그리고 허스트(McLuhan, Pulitzer, & Hearst, 1910)는 …라고 주장했다. 맥루언 등은 … 한다고 한다.

…라는 점에 주목한다(McLuhan, Pulitzer, & Hearst, 1910). 또한 …도 지적되었다(McLuhan et al., 1910).

### (6) 두 편 이상 연구의 인용

○ 한 괄호 안에 두 개 이상의 인용을 표기할 경우, 국내문헌(저자명

의 가나다 순), 동양문헌(국가명의 가나다 순), 서양문헌(저자명의 알파벳 순) 순으로 배열하고, 각 연구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 동일 저자의 연구를 두 편 이상 인용할 경우, 출판연도 순으로 배열하되, 저자명은 한 번만 표기한다. 출판연도가 동일할 경우는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예) 관련 연구들(김수철, 2010; 박희수, 2013; 内藤正中, 2010; Hearst, 1910; Pulitzer, 1911)은 이러한 결과를 …  
최근 연구들(김수철·박희수, 2012, 2013)은 …  
이러한 연구(김수철, 2011a, 2011b)는 …

### 3. 참고문헌의 작성

#### 가. 일반규정

- (1) 참고문헌은 본문 다음 ‘참고문헌’이라는 제목 아래 나열하되, 본문에 인용하거나 언급한 문헌만을 기재한다.
- (2) 참고문헌은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순으로 열거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중국어나 일본어 저자명은 한자의 한글식 표기의 가나다순, 서양문헌의 저자명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3) 제1저자의 단독 연구와 공동 연구가 참고문헌에 함께 포함될 경우, 단독 연구를 앞에 배열한다.
- (4) 동일 저자의 문헌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하되, 같은 연도에 출판된 문헌이 두 편 이상일 경우 제목의 가나다 순(영문은 알파벳 순)으로 출판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 (5)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자명은 저자의 완전한 성명을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Surname)을 적고, 이름(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생략 표시로 마침표를 찍는다. 저자가 다수인 경우, 국내문헌과 동양문헌의 저

자는 가운데점(·)으로 구분한다. 저자가 다수인 서양문헌의 경우는 쉼표(,)로 구분하되, 마지막 저자는 ‘&’로 구분한다.

## 나. 문헌의 종류별 표기

### (1) 단행본

저자명 (출판연도). 단행본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국내 저작물 제목은 꺾쇠(< >) 안에 표기하고, 서양 저작물 제목은 이탤릭체로 하되, 주제목과 부제목의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편집서일 경우, 국내 편집서는 저자명 뒤에 ‘(편)’, 서양 편집서는 ‘(Ed.)’ 또는 ‘(Eds.)’를 표기한다. 판수(edition)는 제목 뒤에 (제2판) 또는 (2<sup>th</sup> ed.) 등으로 표기한다. 출판사가 위치한 도시(미국은 주 포함)와 출판사명을 기재하고, 둘 사이는 쌍점(:)으로 구분한다. 보고서는 보고서의 일련번호를 제목 뒤 괄호 안에 기재한다.

예 김수철 (2015). <디지털시대>. 서울: 책세상.

박희수 (편) (2013). <세계의 언론법>. 부산: 책고을.

Hearst, W. R., Pulitzer, J., & McLuhan, H. M. (Eds.) (1950). *History of privacy: Arising issues of privacy in public space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최수연 (2013). <대량 조정처리신청 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조사연구 2015-001).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2)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 호수, 쪽수. 순으로 하되, 국내 학술지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쪽이 여러 면에 걸칠 경우 붙임(-)으로 표기한다. 서양 학술지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주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한다.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호수는 권수 뒤 괄호 안에 기재하되, 이전 호의 쪽수가 다음호로 이어지는 연속번

호 체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수를 적지 않는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Hearst, W. R. (1950).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Journal of Human Rights*, 18(3), 123-142.

### (3) 편저 속의 한 장(Chapter)이나 논문

편집된 책에 포함된 한 장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장의 저자명 (출판연도). 장의 제목. 편집자명 (편). 편집서명 (쪽수). 출판지: 출판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서양문헌은 편집자명 앞에 ‘In’을 쓰고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글자를 쓰고 성(Surname)을 기재한다. 마지막 편집자 성 뒤에 ‘(Ed.)’ 또는 ‘(Eds.)’를 쓴다. 이때 국내 편집서명은 꺾쇠 안에 표기하고 서양 편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김수철 (2013).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언론중재제도. 박희수·최수연 (편). <미디어법제의 미래> (123-142쪽). 서울: 새미디어.

Hearst, W. R. (1950). The Relations between public interest and privacy. In J. Pulitzer, & H. M. McLuhan (Eds.), *Privacy and Big Data: Surveillance or Public good?* (pp. 703-732). Trenton, NJ: Ablex.

### (4) 번역서 또는 편역서

원저자 (원저 출판연도). 원저 제목(출판본). 역자 (번역서 출판연도). 번역서 제목.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고, 역자명 뒤에 ‘(역)’ 또는 ‘(편역)’을 표기한다.

예 McLuhan, H. M. (2013). *Remedies for damage to reputation* (3<sup>rd</sup> ed.). 김수철 (역) (2014). <명예의 훼손과 구제>. 서울: 서울출판사.

### (5) 학술대회 발표 논문

발표자명 (발표연도, 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 발표 도시명(:발표 장

소 표기 가능). 순으로 표기한다. 논문명은 꺾쇠 안에 기재한다.

예 최수연 (2014, 8월).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대전: 언론연구소.

## (6) 학위논문

국내 대학 학위논문은 저자명 (학위 수여 연도). <논문제목>. 학위 수여 대학과 학위명. 순으로 한다. 서양 대학의 경우, 학위명, 수여 대학, 국가명(미국은 도시 및 주)을 쉼표(.)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논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미출판 논문에 대해서는 학위명 뒤에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를 표기한다.

예 박희수 (2015). <부정적 보도의 강도가 조정 결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cLuhan, H. M. (1995). *A Study 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d cross-border complaints on med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Y.

## (7) 신문, 잡지, 또는 뉴스레터

출판일자가 명확한 경우 저자명 뒤에 출판년, 월을 괄호 안에 표기하고, 불명확한 경우는 출판 연도와 월만 표기하거나, 출판 연도와 계절을 표기한다. 신문기사는 게재면을 기재하고, 여러 면에 걸쳐 실린 경우는 해당 면 모두를 기입한다.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는 신문명을 저자명으로 하고, 특정인의 기고문은 기고자의 이름을 저자명으로 한다. 익명의 기고자는 기사의 제목 두 세 단어로 작성자를 대신한다.

예 한국신문 (2014, 2, 28). 미디어 콘텐츠 투자 늘었다. 3면, 4면.

최수연 (2013, 3, 4). 신생 미디어 플랫폼, 부작용 대비해야. <한국신문>, 11면.

McLuhan, H. M. (2013, July 5). Interactive storytelling and multimedia. *The New York Times*, pp. B1, B5.

신생 미디어 플랫폼 (2013, 3, 4). <한국신문>, 11면.

## 다. 온라인 자료 표기

### (1) 정기간행물

학술논문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제목 뒤에 출처 형태를 [전자매체본], [On-Line], [Electronic version] 중 하나로 기재한다. 마지막에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주소(URL: )를 제시한다(외국문헌의 경우 Retrieved from으로 표기). 인쇄본 없이 온라인 상에서만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권, 호수 기입 없이 간행물명과 URL만 제시한다.

예 김수철 (2015). 언론조정중재모델의 새로운 모색 [전자매체본]. <언론과 인권>, 1권 1호, 14-24. URL: <http://www.pressandrights.go.kr/reference/journal.jsp>

Achankeng, F (2014).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On-line]. *African Journal on Conflict Resolution*, 13(2), 11-38.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 (2) 비정기간행물

저자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없는 문서는 제목을 저자명으로 간주하여 표기한다.

예 Conflict and conflict resolution in Africa: Engaging the colonial factor (*n. d.*). Retrieve from <http://www.ajol.info/index.php/ajcr/article/view/101863/91902>

### (3) 연구보고서 또는 세미나 자료

기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와 같이 문서 제공자와 문서 작성자가 구분되는 경우는 기관명을 먼저 기재하고 웹 사이트 주소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작성자를 먼저 쓰고자 할 경우에는 웹 사이트에 문서가 게재된 연도와 논문 제목을 기입한 후 괄호 안에 연구보고서의 이름을 표기한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최수진·김정섭 (2014). 인터넷 공간에서 기사 어뷰징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 2014-19). URL: [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http://www.kpf.or.kr/board/K/list.do?menu_link=pds/Publication&p_menu_id=4&menu_id=193&menu_orderby=2&tabYn=N)

#### (4) 기타 전자 매체 자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기재한다. 온라인상에서 읽은 기사는 기사 작성자를 쓰고, 괄호 안에 기사 작성일을 표기한다.

☞ 통계청 (2013). 정기간행물 연도별 증감현황. URL: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O#SubCont)

금준경 (2015, 1, 14). 어뷰징 기자들과 대화 “클러스터링? 검색기사 막기 힘들 것”. <미디어 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228>

### 라. 법률 자료의 표기

#### (1) 판례

우리 판례는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순으로 기재하고, 미국판례는 사건이름, 판례집 권수, 판례집 이름, 해당 판례의 첫 페이지, 판결 연도 순으로 한다. 판례를 본문에서 인용할 때에는 ‘판례명(연도)’, 또는 ‘(판례명, 연도)’로 표기하고, 외국 판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헌재 2006. 6. 29. 선고 2005헌마165 결정.

(대법원, 2013. 2. 14.)

*Brown v. Board of Educ.*, 347 U.S. 483 (1954).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Lessard v. Schmidt*(1972) 또는 (*Lessard v. Schmidt*, 1972)

## (2) 법령

우리 법률은 법률명 다음에 법률시행일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미국의 법률명, 권, 출처, § 절 번호, 시행연도 순으로 표기하고, 법령을 본문에서 인용할 때는 ‘법률명(시행연도)’로 기재한다. 법률개정안은 개정 법률안명 다음에 대표발의자와 발의일자를 기재한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1. 4. 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재영, 2015. 1. 30.).

Mental Health Systems Act, 42 U.S.C. § 9401 (1988).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 4. 표와 그림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목을 붙이고, 표 또는 그림의 상단에 제시한다.

나. 관련된 표와 그림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꺾쇠 안에 표기(예시: <표 1> 참조.) 한다.

다. 표,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때는 표와 그림의 하단 왼쪽에 출처를 표시한다.

##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재진 ■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편집위원 강승식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은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권형돈 ■ 공주대 법학과 교수

상윤모 ■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보건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미선 ■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영재 ■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미디어와 인격권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ISSN 2465-9207

2024년 제10권 제2호

2024년 8월 15일 발행

편집·발행 ■ 언론중재위원회

인쇄 ■ 도서출판 관악사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 연구팀

[전화] 02.397.3041~4

[이메일] journal@pac.or.kr

-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 본 학술지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pac.or.kr](http://www.pac.or.kr)
- 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성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